

제 21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3차 본회의 [2013.12.16(월)]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I. 안건현황	4
1. 회계구분	4
2. 심사경과	4
II. 예산안 일반현황	5
1. 예산안 총괄개요	5
2. 2013년도 예산대비 증감현황	6
1) 세입(일반·특별회계)	6
2) 세출(일반·특별회계)	7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수정안 포함)	11
1) 기금별 운용계획	11
2) 기금별 조성규모	12
III. 전문위원 검토보고	13
1. 2014년도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13
2. 인천시 예산안의 특징	16
3. 세입예산	18
1) 연도별 재정규모	18
2) 일반회계	21
3)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28
4) 지방채	32
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7

4. 세출예산	39
1) 기능별 세출예산	39
2) 성질별 세출예산	43
3) 재정 투·융자사업	52
4) 계속비사업	54
5)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55
6) 인천시 주요사업관련 예산	58
7) 주민참여예산	61
8) 성인지예산	62
9)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64
IV. 심사결과	66
1. 중점심사내용	66
2. 토론요지	70
3. 심사결과	71
4. 소수의견	85
5. 기타사항	85

1. 회계구분

가. 소관부서 : 인천광역시

나. 회계구분 :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3. 11. 11.

나. 제출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3. 12. 09.

라. 상정일자 : 2013. 12. 09. ~ 12. 11.

○ 제안설명 : 기획관리실장 박 준 하

○ 검토보고 : 운영전문위원 임 조 순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II 예산안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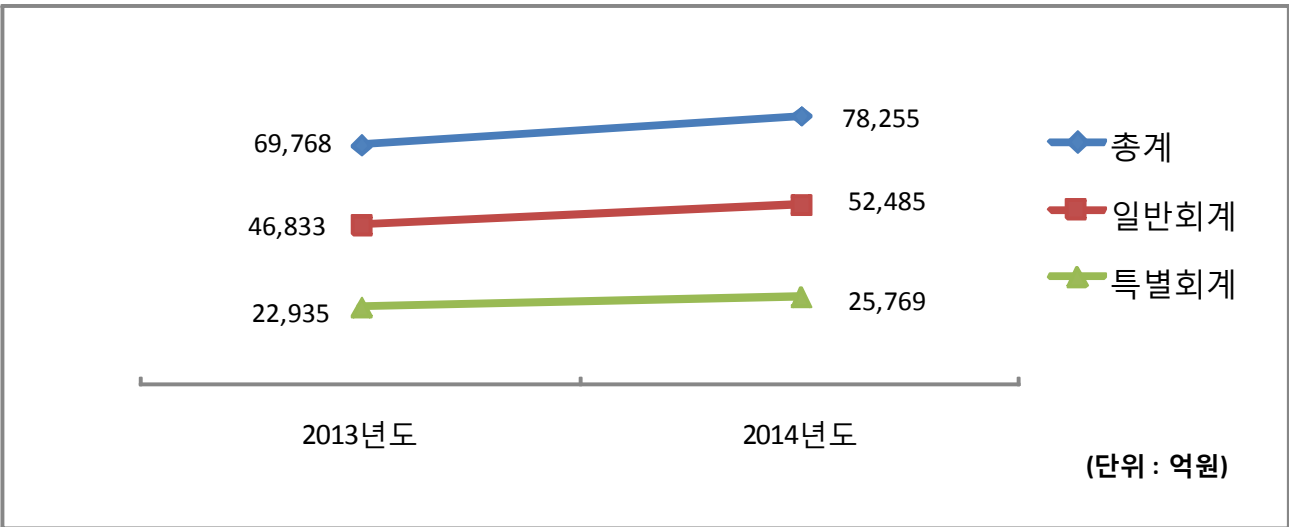
1. 예산안 총괄개요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율(%)
계	7,825,462,242	6,976,847,060	848,615,182	12.16
일 반 회 계	5,248,539,661	4,683,331,394	565,208,267	12.07
특 별 회 계	2,576,922,581	2,293,515,666	283,406,915	12.36
공기업특별회계	1,242,217,000	1,202,667,857	39,549,143	3.29
기 타 특별회계	1,334,705,581	1,090,847,809	243,857,772	22.35

*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예산액임

<예산안 총규모 증감 비교>



2. 2013년도 예산대비 증감현황

1) 세 입 (일반·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율 (%)
총 계	7,825,462,242	6,976,847,060	848,615,182	12.16
지 방 세	2,450,223,000	2,149,501,000	300,722,000	13.99
보 통 세	1,922,393,000	1,798,035,000	124,358,000	6.92
목 적 세	337,906,000	330,974,000	6,932,000	2.09
지 난 년 도 수 입	189,924,000	20,492,000	169,432,000	826.82
세 외 수 입	1,648,217,010	1,868,039,828	△219,822,818	△11.77
경 상 적 세 외 수 입	687,509,974	924,646,984	△237,137,010	△25.65
임 시 적 세 외 수 입	960,707,036	943,392,844	17,314,192	1.84
지 방 교 부 세	321,194,221	321,767,986	△573,765	△0.18
보 조 금	1,746,034,760	1,519,827,895	226,206,865	14.88
지 방 채	841,160,440	506,081,899	335,078,541	66.21
차 입 금	195,000,000	396,281,899	△201,281,899	△50.79
지 방 채 증 권	646,160,440	109,800,000	536,360,440	488.49
보 전 수 입 등 내 부 거 래	818,632,811	611,628,452	207,004,359	33.84
보 전 수 입 등	118,310,595	88,938,245	29,372,350	33.03
내 부 거 래	700,322,216	522,690,207	177,632,009	33.98

*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예산액임

2) 세 출 (일반·특별회계)

2-1. 기능별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율 (%)
합 계	7,825,462,242	6,976,847,060	848,615,182	12.16
일반공공행정	1,066,292,140	880,678,121	185,614,019	21.08
공공질서및안전	31,416,971	34,476,046	△3,059,075	△8.87
교육	521,093,357	530,026,247	△8,932,890	△1.69
문화및관광	754,772,401	684,758,697	70,013,704	10.22
환경보호	519,624,332	489,523,208	30,101,124	6.15
사회복지	1,860,501,891	1,584,466,715	276,035,176	17.42
보건	98,430,347	109,766,944	△11,336,597	△10.33
농림해양수산	147,752,337	104,659,347	43,092,990	41.17
산업·중소기업	99,128,036	87,175,874	11,952,162	13.71
수송및교통	1,279,307,995	1,071,546,498	207,761,497	19.39
국토및지역개발	872,465,069	887,996,295	△15,531,226	△1.75
과학기술	40,424,543	16,943,304	23,481,239	138.59
예비비	49,733,432	48,840,119	893,313	1.83
기타	484,519,391	445,989,645	38,529,746	8.64

*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예산액임

2-2. 조직별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7,825,462,242	6,976,847,060	848,615,182	12.16
의 회 사 무 처	11,696,726	11,037,683	659,043	5.97
대 변 인 실	10,982,526	10,593,959	388,567	3.67
감 사 관 실	414,688	348,243	66,445	19.08
교육기획관실	524,583,717	533,512,239	△8,928,522	△1.67
국제경기지원관실	7,287,840	208,280	7,079,560	3399.06
도시디자인추진단	4,042,642	3,522,838	519,804	14.76
국제협력관실	9,207,708	11,207,785	△2,000,077	△17.85
소통기획관실	302,749	207,633	95,116	45.81
기획관리실	1,082,030,268	901,907,601	180,122,667	19.97
경제수도추진본부	273,349,399	185,527,012	87,822,387	47.34
안전행정국	171,503,891	142,490,376	29,013,515	20.36
보건복지국	875,641,736	859,341,393	16,300,343	1.90
여성가족국	1,010,684,924	795,932,433	214,752,491	26.98
건설교통국	706,059,535	691,198,703	14,860,832	2.15
문화관광체육국	161,326,690	195,731,978	△34,405,288	△17.58
도시계획국	180,479,079	116,923,648	63,555,431	54.36
환경녹지국	360,691,139	366,512,041	△5,820,902	△1.59
항만공항해양국	190,624,619	208,231,947	△17,607,328	△8.46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	563,671,456	464,981,899	98,689,557	21.22
소방안전본부	40,448,535	38,996,451	1,452,084	3.72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율(%)
인 재 개 발 원	6,038,786	5,857,696	181,090	3.09
보 건 환 경 연 구 원	14,011,480	12,963,779	1,047,701	8.08
농 업 기 술 센 터	6,740,770	6,091,796	648,974	10.65
지 역 소 방 서 등	128,503,818	122,443,711	6,060,107	4.95
상 수 도 사 업 본 부	288,670,989	266,049,543	22,621,446	8.50
도 시 철 도 건 설 본 부	468,210,006	279,744,634	188,465,372	67.37
종 합 건 설 본 부	72,667,481	62,768,646	9,898,835	15.77
여 성 복 지 관	2,870,977	2,508,779	362,198	14.44
여 성 의 광 장	1,857,906	1,842,130	15,776	0.86
종 합 문 화 예 술 회 관	20,187,686	20,612,463	△424,777	△2.06
동 부 공 원 사 업 소	12,556,856	11,926,257	630,599	5.29
서 부 공 원 사 업 소	4,447,620	4,332,770	114,850	2.65
북 부 공 원 사 업 소	4,188,086	2,650,648	1,537,438	58.00
미 추 홀 도 서 관	6,066,292	6,485,250	△418,958	△6.46
시 립 박 물 관	6,679,792	7,278,921	△599,129	△8.23
구 월 농 축 산 물 도 매 시 장 관 리 사 무 소	3,123,805	3,176,148	△52,343	△1.65
삼 산 농 산 물 도 매 시 장 관 리 사 무 소	3,538,550	3,220,144	318,406	9.89
수 산 자 원 연 구 소	2,965,539	3,237,898	△272,359	△8.41
서 울 사 무 소	489,942	531,367	△41,425	△7.80
수 산 사 무 소	1,174,425	1,170,518	3,907	0.33
서 부 여 성 회 관	3,295,607	3,954,547	△658,940	△16.66
경 제 자 유 구 역 청	582,145,962	604,634,513	△22,488,551	△3.72

*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예산액임

2-3. 성질별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증 감	증감율
합 계	7,825,462,242	100	6,976,847,060	100	848,615,182	12.16
인 건 비	359,300,043	4.59	335,221,133	4.80	24,078,910	7.18
물 건 비	231,589,977	2.96	239,617,380	3.43	△8,027,403	△3.35
경 상 이 전	3,425,352,804	43.77	3,077,000,884	44.10	348,351,920	11.32
자 본 지 출	1,933,536,750	24.71	1,786,806,632	25.61	146,730,118	8.21
용자 및 출자	83,794,000	1.07	90,830,000	1.30	△7,036,000	△7.75
보 전 재 원	696,898,615	8.91	327,824,096	4.70	369,074,519	112.58
내 부 거 래	970,791,940	12.41	924,084,108	13.25	46,707,832	5.05
예비비 및 기타	124,198,113	1.59	195,462,827	2.80	△71,264,714	△36.46

*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예산액임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수정안 포함

1) 기금별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설치년도	운용계획				소관부서
		2014년도	2013년도	증감액	증감율(%)	
총계		480,896	410,618	70,278	17.1	
통합관리기금	2000	144,365	125,425	18,940	15.1	예산담당관실
남북교류협력기금	2004	4,354	4,873	△519	△10.7	국제협력관실
시립대학발전기금	1995	10,706	10,445	261	2.5	교육기획관실
지방채상환기금	1999	47,206	49,166	△1,960	△4.0	예산담당관실
중소기업육성기금	1993	110,852	70,971	39,881	56.2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에너지사업기금	1992	23,484	24,901	△1,417	△5.7	녹색에너지과
농어촌진흥기금	1998	12,953	12,322	631	5.1	농축산유통과
지방세발전기금	2011	320	375	△55	△14.7	세정과
사회복지기금	1994	9,729	9,802	△73	△0.7	사회복지봉사과, 노인정책과
식품진흥기금	1989	8,063	7,834	229	2.9	위생정책과
여성발전기금	1997	4,124	4,109	15	0.4	여성정책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1994	26,061	16,208	9,853	60.8	주거환경정책관실
재난관리기금	1998	46,262	44,376	1,886	4.3	소방안전본부 (재난관리과)
재해구호기금	2006	32,418	29,811	2,607	8.7	소방안전본부 (재난관리과)

2) 기금별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13년도말 현재액 ㉠	2014년도 기금운용		2014년도말 현재액(d) ㉠+㉡-㉢	증 감	증감율 (%)
		수입 ㉡	지출 ㉢			
합 계	352,477 (260,823)	128,419 (75,708)	225,979 (134,152)	254,917 (202,378)	△97,560 (△58,444)	△27.7 (△22.4)
통합관리기금	91,655	52,711	91,826	52,539	△39,115	△42.7
남북교류협력기금	3,418	936	3,295	1,059	△2,359	△69.0
시립대학발전기금	10,445	261	0	10,706	261	2.5
지방채상환기금	44,628	2,578	30,000	17,205	△27,422	△61.4
중소기업육성기금	48,186	62,666	84,250	26,602	△21,584	△44.8
에너지사업기금	20,462	3,022	5,000	18,484	△1,978	△9.7
농어촌진흥기금	12,051	902	725	12,228	177	1.5
지방세발전기금	26	294	295	27	1	3.8
사회복지기금	9,350	379	570	9,159	△191	△2.0
식품진흥기금	6,411	1,652	2,178	5,884	△526	△8.2
여성발전기금	4,026	98	90	4,034	8	0.2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금	25,453	608	750	25,310	△143	△0.6
재난관리기금	44,749	1,512	5,000	41,261	△3,488	△7.8
재해구호기금	31,618	800	2,000	30,418	△1,200	△3.8

* ()안은 통합관리기금 제외 시 합계

1. 2014년도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 국가재정 여건과 전망

○ 대내외 경제여건은

-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양적완화를 지속하면서 최근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재정이 취약한 유로존 및 아시아 국가들의 재정위기로 불확실한 상태임
- 미국의 출구전략에 따른 금융 불안 및 중국 등 주요 신흥국의 경기 성장 둔화와 함께 최근 발생한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및 채무불이행 위기사태 등 대외 경제여건은 지속적으로 불안하고 유동적인 상태임

○ 재정운용 여건은

- 내수 회복세 등으로 금년보다는 호전될 전망이나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요인은 여전히 잠재
-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 맞춤형 복지 등 대규모 복지공약 등으로 세출은 늘어나는 반면 부동산 경기침체 등 더딘 경기 회복으로 세수부족이 심화되어 국가재정 운용에 어려움 예상

○ 아울러 실질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하여

- 정부는 내년도 실질성장률을 3.9%대로 전망하고 있고, 국회 예산정책처를 비롯한 국내·외 기관도 평균 약 3.7%로 금년보다는 다소 성장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 정부의 2013년도 경제성장률을 당초에 4.3%로 전망하였으나 내수시장의 더딘 회복 및 부동산시장의 불안 등으로 최근(2013.9월)에 2.7%로 전망하여 경제성장률을 무려 1.6%나 대폭 하향 조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금년도 국세에 대한 세수 부족이 다소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를 감안할 때 정부가 '201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9%로 전망하고 있으나, 이는 최근 발표된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치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경제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국세수입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어서 세입 감소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임

<국내외 주요 기관의 2013년·2014년 실질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

전 망 기 관	2013년			2014년	비고 (전망시점)
	전년도 전망	최근 전망	전망차		
평 균	3.6	2.7	△0.9	3.7	
정 부 (기 획 재 정 부)	4.3	2.7	△1.6	3.9	'13.09
국 회 예 산 정 책 처	3.5	2.6	△0.9	3.5	'13.10
한 국 은 행	3.2	2.8	△0.4	3.8	'13.10
KDI(한국개발연구원)	3.4	2.6	△0.8	3.7	'13.11
Keri(한국경제연구원)	3.3	2.4	△0.9	3.4	'13.10
L G 경 제 연 구 원	3.3	2.8	△0.5	3.6	'13.10
현 대 경 제 연 구 원	3.5	2.6	△0.9	3.8	'13.10
I M F	3.9	2.8	△1.1	3.7	'13.10

□ 인천시의 재정여건

○ 세입전망은

- 부동산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취득세 영구 인하 등 정부의 잦은 부동산 정책 변경으로 인한 시장 혼란으로 지방세 수입은 다소 감소할 전망
- 국가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안정적인 세입확보가 불투명하나 내수경기 회복세와 영유아 보육, 국민행복연금(기초연금+노령연금), 일자리 확충, 취약계층 지원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은 다소 증가 예상
- 또한 지방채의 경우 고금리 악성채무의 조기상환과 재정 건전화를 위해 발행 최소화로 인천시의 내년도 세입은 금년과 유사한 수준

○ 재정운용 방향으로는

-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출구조조정의 지속추진, 신규사업 억제 등 엄정한 재정관리와 운용을 첫번째 기본 방향으로 선정
- 2014년도 시의 최대 현안사항인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신규사업보다는 대형사업의 마무리 투자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
- 특히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함께하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과 예산편성 과정의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를 적극 운영하고 핵심 주요사업인 3-Care(보육, 교육, 일자리) 사업을 완성하며,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 시기조정을 통한 탄력적 재정운영, 조직운영 경비 동결, 지방채 관리 강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잡고 있음

2. 인천시 예산안의 특징

□ 세입예산의 경우

- 지방세 수입 불안, 지방채 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 의존재원인 국고 보조금 및 교부세의 미확정 등으로 세수부족이 예상되고, 특히 채무율이 40%에 육박하고 있어 재정위기단체¹⁾ 지정 가능성으로 인해 지방채 추가 발행도 쉽지 않은 실정임.

□ 세출예산의 경우

- 글로벌 경제위기와 맞물려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우리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그동안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의 억제로 최대한 균형재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따른 정부의 복지공약 확대에 따른 인천시의 매칭예산 증가와 그동안 재정혜택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원도심에 대한 활성화 대책,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지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 예산안 규모관련

- 시·도별 2014년도 예산편성안을 살펴보면

인천시의 경우 경기회복이 불투명한 시점에서 전년대비 12.2% 증액 편성되었는바, 이는 타시도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전국평균인 5.7%보다 2배이상 높은 규모이며,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2(재정위기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1항

2. 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과 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액의 총 합계액이 해당 연도 최종예산의 40%를 초과하는 경우

- 이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도시철도2호선 건설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낙관적 전망에 의한 것은 아닌지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시도별 2014년도 예산편성안2) >

(단위 : 억원/%)

시도명	2014 예산안	2013 당초예산	증감액	증감율	비고
계	1,145,111	1,083,045	62,066	5.7	
서울	245,042	235,069	9,973	4.2	
부산	84,049	83,605	444	0.5	
대구	60,206	59,085	1,121	1.9	
인천	78,254	69,768	8,486	12.2	
광주	36,184	34,313	1,871	5.5	
대전	40,712	33,755	6,957	20.6	
울산	27,852	25,462	2,390	9.4	
세종	7,605	5,954	1,651	27.7	
경기	159,988	155,676	4,312	2.8	
강원	39,965	37,171	2,794	7.5	
충북	35,582	33,381	2,201	6.6	
충남	51,492	45,867	5,625	12.3	
전북	48,197	46,330	1,867	4.0	
전남	58,032	56,247	1,785	3.2	
경북	69,940	65,618	4,322	6.6	
경남	66,143	62,077	4,066	6.6	
제주	35,868	33,667	2,201	6.5	

2) 2013.11.11일 각 시도별 예산안 의회 제출 금액(총계 기준)

3. 세입예산

<연도별 예산규모 증감추이>

(단위 : 억원 / %)

회 계 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예산액	증감율 ('12대비)	예산액	증감율 ('13대비)	예산액	증감율 ('14대비)
합 계	65,637	75,448	14.9	69,768	△7.53	78,255	12.16
일반회계	39,515	44,428	12.4	46,833	5.41	52,485	12.07
특별회계	26,121	31,020	18.7	22,935	△26.06	25,769	1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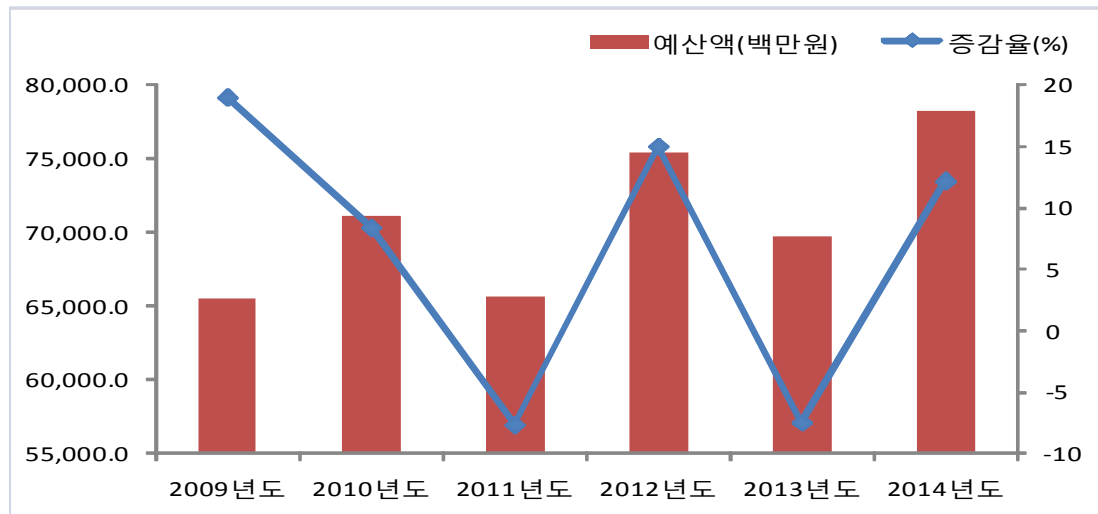
* 연도별 예산은 당초예산액 기준

1) 연도별 재정규모

□ 2010년도까지의 예산규모는

-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다가 2011년도에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7.7%로 감액 편성되었고 2012년도에는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의 본격적인 건설 등으로 14.9%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2013년도에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7.5% 감소되었다가 2014년도에는 지방소비세 및 과년도수입의 증가와 더불어,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12.1% 증액 편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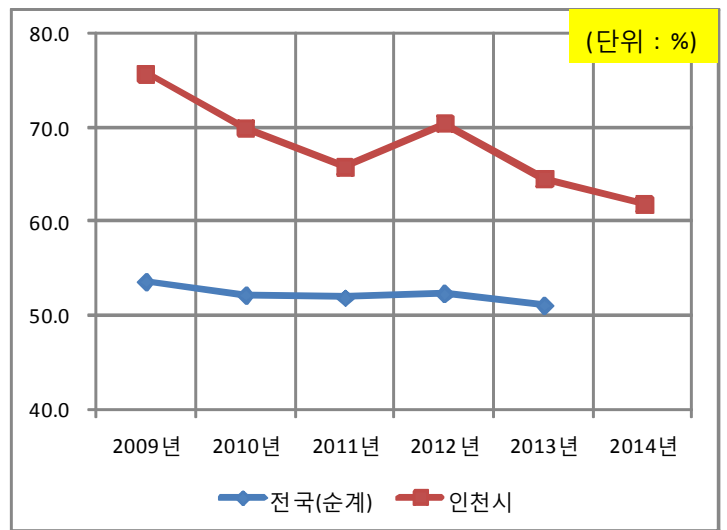
<최근 재정규모 증감 추이>



□ 인천시의 재정자립도³⁾는

○ 지방세 수입의 증가율보다는 일반회계의 예산규모가 큰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일반회계 세입중 자체수입이 자치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2013년도 64.6%에서 2014년도에는 61.8%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전국(순계)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큰 변동없이 50% 초반대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인천시의 재정자립도는 2009년의 75.7%에서 2014년에는 61.8%로 무려 13.9%가 감소하는 등 매년 큰폭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음



○ 이는 시의 자체수입인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크게 늘지 않고 있으나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교부세, 지방채 등의 증가로 일반회계의 규모는 확대됨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있음

○ 또한 전국평균과 비교하면 우리시의 재정은 상당히 양호하다고 볼수 있으나 시의 재정자립도가 매년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어 건전재정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연도별 재정자립도 추이⁴⁾>

(단위 :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국(순계)	53.6	52.2	51.9	52.3	51.1	미확정
인천시	75.7	70.0	65.8	70.4	64.6	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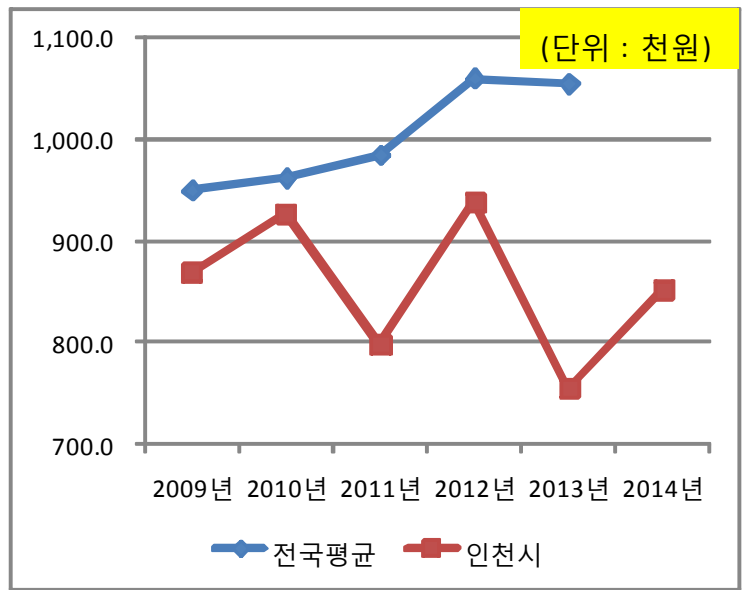
3) 재정자립도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 / 일반회계 예산규모(지방교육세 제외)

4) 2013년도 예산개요(인천광역시) p77 '재정자립도' 참조

□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⁵⁾은

○ 전국적 평균은 완만한 증가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인천시의 경우 85만 3천원으로 2013년도 대비하여 12.8%, 9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 2012년과 비교하면 9.1%, 8만 5천원이 감소하는 등 일정한 방향성 없이 증감이 교차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바,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지방세 추계시 재정 상황이나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연도별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 추이⁶⁾>

(단위 : 천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국평균	950	962	985	1,060	1,055	미확정
인천시	869	927	799	938	756	853

5) 주민 1인당 부담액(852,711원) : 지방세(2,450,223백만원) / 인구수[2,873,451명(2013년 10월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수-외국인 제외)]

6) 2013년도 예산개요(인천광역시) p81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 참조

2) 일반회계

- 총규모는 5조 2,485억원으로 2013년도 세입규모 4조 6,833억원 대비 12.07%인 5,652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외수입은 전년도 보다 2.59%, 226억원이 증가한 8,973억원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0.38%, 12억원이 증가한 3,211억원이고, 국고보조금은 다소 큰폭인 14.99%, 1,628억원이 증가하여 1조 2,492억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함
- 지방채는 2013년 대비 38.58%, 579억원이 증가된 2,079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9.39%, 200억원이 증가한 1,229억원으로 편성함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5,248,540	4,683,331	565,208	12.07
지 방 세 수 입	2,450,223	2,149,501	300,722	13.99
보 통 세	1,922,393	1,798,035	124,358	6.92
목 적 세	337,906	330,974	6,932	2.09
지 난 년 도 수 입	189,924	20,492	169,432	826.82
세 외 수 입	897,264	874,636	22,628	2.59
경 상 적 세 외 수 입	62,243	63,542	△1,299	△2.04
임 시 적 세 외 수 입	835,021	811,094	23,927	2.95
지 방 교 부 세	321,113	319,887	1,226	0.38
보 조 금	1,249,184	1,086,375	162,809	14.99
지 방 채	207,867	150,000	57,867	38.5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2,889	102,933	19,956	19.39
보 전 수 입 등	5,747	5,494	253	4.61
내 부 거 래	117,143	97,439	19,703	20.22

□ 세입재원별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2013년도 대비 13.99%, 3,007억원이 증가한 2조 4,502억원이고,
- 지방세 수입의 주요 증가 세목은 취득세 0.17%, 14억원, 자동차세 1.23% 43억원, 담배소비세 0.84% 12억원, 지방소비세 124.61%, 1,240억원 각각 증가하였고, 특히 지난년도 수입은 826.82%, 1,694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한 반면, 레저세는 13.50%, 34억원이 감소하고, 지방소득세 43억원, 지방교육세 4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지방세 계	2,450,223	100.0	2,149,501	100.0	300,722	13.99
보 통 세	1,922,393	78.46	1,798,035	73.38	124,358	6.92
취 득 세	835,818	34.11	834,392	34.05	1,426	0.17
등록면허세	3,140	0.13	2,423	0.10	717	25.59
주 민 세	9,381	0.38	9,117	0.37	264	2.90
자 동 차 세	356,056	14.53	351,726	14.35	4,330	1.23
레 저 세	21,537	0.88	24,899	1.02	△3,362	△13.50
담배소비세	149,008	6.08	147,774	6.03	1,234	0.84
지방소비세	223,596	9.13	99,550	4.06	124,046	124.61
지방소득세	323,857	13.22	328,154	13.39	△4,297	△1.31
목 적 세	337,906	13.79	330,974	13.51	6,932	2.09
지역자원시설세	59,997	2.45	48,632	1.98	11,365	23.37
지방교육세	277,909	11.34	282,342	11.52	△4,433	△1.57
지난년도수입	189,924	7.75	20,492	0.84	169,432	826.82

*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예산액임

- 지방세 수입의 약 34%를 차지하는 취득세는 취득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의 8,344억원보다 14억원이 증액된 8,358억원으로 편성하였는바,
 - 아파트매매 현황에서 보듯이 아파트 거래량이 다소 늘어나는 등 부동산경기 회복의 기대감과 세율인하에 따라 일부 거래량 증가(557억원⁷⁾)를 기대할 수도 있으나,
 - 이는 세율인하로 인해 연간 약 2,0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며 그동안 정부에 영구인하에 따른 보전대책을 요구한 사항과 배치되며,
 - 또한 보전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을 요구하여 왔고 이와 관련하여 지방소비세 보전분⁸⁾ 1,551억원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예산에 추가로 편성하였는데 세수추계에 대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함

<아파트매매 연도별·행정구역별 현황9)>

(단위 : 천건 / 천㎡)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10월	
	호수	면적	호수	면적	호수	면적	호수	면적	호수	면적	호수	면적
전국	583	40,939	632	47,759	581	44,034	705	53,545	504	38,170	475	36,005
인천	40	2,688	28	2,004	24	1,758	27	1,965	24	1,814	29	2,196
서울	63	4,609	79	6,174	47	3,674	64	4,882	45	3,437	53	4,103
경기	133	9,050	150	11,166	106	7,868	156	11,641	105	7,989	117	9,160

7) 2013인천광역시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요구자료 p127 : 시세 세수전망(2014년도) 참조

8) 예산서안 p63 세정과 세입편성(임시적세외수입/기타수입/그외수입)

※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정부의 보전대책으로 총 6%중 '14년에는 지방소비세 3%인상과 보전분으로 3%를 세외수입으로 편성함

9) 국토교통부 온나라부동산 정보 포털(www.omnara.go.kr) 부동산 통계자료 참조

- 지방소비세는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정부의 보전대책으로 현행 부가가치세의 5%에서 2014년에는 세율인상분 3%¹⁰⁾를 더해 8%로 반영하여 전년 996억원이던 지방소비세가 124.61%, 1,240억원 증가한 2,236억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이는 정부의 보전대책에 따라 3% 인상할 경우 산술평균하여 대략 598억원(996억원×3%/5%)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2배가 넘는 수준으로 편성되었는 바, 세수 추계가 적정한지 이에 대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함

- 과년도 수입은 전년의 205억원에서 826.82%, 1,694억원이 증가한 1,899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가 (주)DCRE에 부과했던 토지·건물 등에 대한 취·등록세 체납분으로 사료되나, DCRE측에서 현재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절차 등을 피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는 등 납부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어, 이에 대한 현재 소송진행 사항과 시의 대응방안 및 대책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한편 2013년 지방세 지출보고서¹¹⁾에 따르면 인천시의 경우 2012년 결산기준 지방세 비과세 또는 감면 실적이 6,414억원에서 금년도 추계규모는 5.0%, 322억원 증가된 6,736억원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비과세·감면 사유는 근거법령에 따라 142개의 유형이 있고, 세목별로는 취득세의 비과세·감면 비중이 금년 기준으로 6,542억원으로 전체의 97.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¹⁰⁾ 2013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요구자료 p127 : 시세 세수전망(2014년도) 참조

¹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등에 따라 지방세중 비과세 또는 감면 실적(직전 회계연도) 및 추정 금액(해당 회계연도)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

- 특히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¹²⁾'은 2,933억원으로 전체 비과세·감면액중 4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취득세율 인하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천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들은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는 물론 학계, 시민단체들도 정부의 근본 대책을 요구하고 있어, 무조건적인 비과세나 감면보다는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맞춰 탄력세율 적용 및 시세감면조례 정비, 관련법령 개정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13년(추계)	비중	'12년(결산)	비중	증 감	증감율
총 계	673,643	100.0	641,431	100.0	32,212	5.0
보 통 세	668,098	99.2	635,976	99.1	32,121	5.1
취 득 세	654,158	97.1	608,376	94.8	45,781	7.5
(구)취득세	-	-	9,200	1.4	△9,200	순감
등 록 세	-	-	4,767	0.7	△4,767	순감
등록면허세	361	0.1	611	0.1	△250	△40.9
주 민 세	456	0.1	428	0.1	27	6.4
자 동 차 세	13,124	1.9	12,594	1.9	529	4.2
목 적 세	5,546	0.8	5,455	0.9	91	1.7
지역자원시설세	5,546	0.8	5,454	0.9	91	1.7
도시계획세	-	-	1	0.0	△1	순감

12) 2013년 지방세지출보고서 p14

- 다음으로 세외수입은 8,973억원으로 전년 대비 2.59%, 226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전년에 터미널 등 공유재산 매각이 완료되어 재산매각 수입이 1,930원이 감소한 반면, 지방소비세 보전분 1,551억원이 신규 편성되고 또한 검단산업단지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인천도시공사) 278억원, 소래길 및 소래대교 확장(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 부담금 : 한화외 1개사) 230억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다소 증가함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액>

(단위 : 백만원 / %)

구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	증감율
세 외 수 입		897,264	874,636	22,628	2.59
경상적세외수입	소 계	62,243	63,542	△1,299	△2.04
	재산임대수입	4,403	3,137	1,267	40.38
	사용료수입	37,260	40,957	△3,697	△9.03
	수수료수입	9,785	9,576	209	2.18
	사업수입	2,523	2,493	30	1.21
	징수교부금수입	4,963	4,110	853	20.76
	이자수입	3,309	3,269	40	1.23
임시적세외수입	소 계	835,021	811,094	23,927	2.95
	재산매각수입	561,413	754,460	△193,047	△25.59
	부담금	83,062	15,610	67,452	432.11
	기타수입	190,165	40,295	149,870	371.93
	지난년도수입	381	729	△348	△47.75

*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예산액

- 한편 매년 재정여건이나 정책방향에 따라 변동폭이 큰 임시적 세외수입과 달리 다소 안정적인 수입인 세외수입중 재산임대수입¹³⁾ 및 징수교부금수입¹⁴⁾은 각각 40.38%와 20.76% 크게 증가하고, 사용료수입¹⁵⁾은 9.03% 감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13) 인천축구전용경기장내 수익시설 토지임대료(1,050백만원, p84) 신규 편성 등

14)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증가[증 725백만원(3,227 → 3,952백만원, p98)] 등

15) 도원체육관 등 9개소 운영수입 감소[△3,900백만원(13,252 → 9,352백만원, p84)] 등

○ 아울러 공유재산매각 수입은 전년에도 북항기부채납 토지의 매각이 여러 차례 유찰되는 등 2014년에도 부동산 경기회복 부진으로 매각 가능성이 불투명한 실정임. 특히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의 기준가격¹⁶⁾이 2,237억원¹⁷⁾이나 매각수입은 3,100억원으로 편성되어 최근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공시지가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에 대한 산정 근거와 매각 가능성 및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재정 대책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일반회계 공유재산 매각 수입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고 (소관부서)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561,413	
시유재산 매각귀속 수입금	3,487	회계과 (p64)
시유재산 매각수입	147,722	회계과 (p64)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	310,000	농축산유통과 (p95)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지구 기부채납 토지매각수입	25,591	도로과 (p114)
북항기부채납 토지매각수입(LED단지)	74,607	도시계획과 (p116)
국민주택 부지 매각수입	6	건축계획과 (p117)

16) 기준가격 : 토지 - 공시지가(2013.1.1 기준), 건물 - 건물시가표준액(2013.1.1 기준)

17) 2014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참조(2013.10.30일 시장 제출), 2013. 11.27일 본회의 의결(승인)

3)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 의존수입 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11.66%, 1,640억원이 증가하여 1조 5,703억원으로 편성하였음

<일반·특별회계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예산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전년도 대비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570,297	1,406,262	164,035	11.66
지방교부세		321,113	319,887	1,226	0.38
	보통교부세	265,000	265,000	0	0.00
	특별교부세	668	0	668	순증
	분권교부세	55,445	54,887	558	1.02
국고보조금	등	1,249,184	1,086,375	162,809	14.99
	국고보조금	1,095,423	883,189	212,235	24.0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91,673	135,579	△43,906	△32.38
	기	62,087	67,607	△5,520	△8.16

*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예산액

- 지방교부세는 국세수입의 일부를 재정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지역간 세원편차와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재원으로써 내년도 예산액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0.38%가 증가된 3,211억원으로 편성하였음.
- 지방교부세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의 인천시에 대한 교부액은 2008년 불교부 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되어 236억원을 교부받은 이후 매년 조금씩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지만 인구수나 면적 등이 비슷한 타시도와 비교하여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에 있음.
- 인천시보다 인구수와 면적에서 월등히 낮은 대구시와 비교할 경우 2013년 배분액이 8,072억원으로 인천의 3.5배에 달하는 등 매년 재정자립도가 높다하여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바,

○ 교부세 산정시 기준이 되는 측정항목(16개) 및 측정단위(12개)¹⁸⁾등에 대해서도 인천시에 불리하다면 추가나 삭제 등 법령개정도 강력히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전문기관의 자문이나 연구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사료됨

< 시도별 보통교부세 배분현황¹⁹⁾ >

(단위 : 억원/%)

시도명	인구수 (천명)	면적 (km ²)	연도별 보통교부세 배분내역					비고 (제정자립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구성비	
계	50,805	100,239	63,913	72,628	84,353	89,550	100.0	51.1
서울	10,243	605	0	0	0	0	0.0	87.7①
부산	3,546	770	7,109	8,121	9,139	8,631	9.6	51.8⑥
대구	2,508	884	4,925	6,262	7,490	8,072	9.0	46.5⑦
인천	2,813	1,041	1,277	1,486	1,911	2,301	2.6	64.6②
광주	1,466	501	4,170	4,990	5,341	5,487	6.1	40.1⑧
대전	1,520	540	2,899	3,676	4,487	4,628	5.2	52.2⑤
울산	1,139	1,060	952	1,043	1,158	1,174	1.3	62.7③
세종	99	465	0	0	0	1,591	1.8	38.8⑨
경기	11,979	10,171	508	714	773	1,124	1.3	60.1④
강원	1,536	16,871	4,623	5,169	6,300	6,567	7.3	21.7⑮
충북	1,558	7,406	3,631	4,194	4,992	5,246	5.9	27.4⑬
충남	2,017	8,192	4,065	4,581	5,490	5,634	6.3	29.7⑫
전북	1,873	8,067	5,415	5,913	6,592	6,831	7.6	19.1⑯
전남	1,911	12,255	6,856	7,438	8,507	8,771	9.8	16.3⑰
경북	2,695	19,030	7,649	8,309	9,680	10,138	11.3	22.1⑭
경남	3,310	10,534	2,862	3,002	3,737	3,927	4.4	34.4⑩
제주 ²⁰⁾	592	1,847	6,972	7,730	8,756	9,428	10.5	30.0⑪

18)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5조(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 측정항목(16개) : 인건비, 일반관리비, 안전관리비, 문화관광비, 환경보호비, 보건비, 기초생활보장비, 노인복지비, 영유아·청소년 복지비, 장애인복지비, 일반사회복지비, 농림수산물, 지역경제비, 도로개량비, 도로교통비, 지역개발비

- 측정단위(12개) : 공무원수, 인구수, 가구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수, 영유아·청소년수, 등록장애인수, 농수산업 종사자수, 사업체 종사자수, 미개량 도로의 면적, 자동차 대수, 행정구역 면적

19) 2010년도 ~ 2013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참조(안전행정부 교부세과)

20)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5조(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 조항에 의거 제주자치도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으로 산정토록 별도 규정됨

□ 보조금은 14.99% 1,628억원이 증액된 1조 2,492억원으로

○ 이중 국고보조금은 24.03%, 2,122억원이 증가한 1조 954억원으로 전년보다 대폭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 영유아 보육료 지원(1,429억원 → 1,964억원, 증 535억원)
-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444억원 → 791억원, 증 347억원)
- 기초노령연금 지급(1,420억원 → 2,346억원, 증 926억원)
- 반환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개발사업(0억원 → 300억원, 증 300억원)

등으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보조금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시의 의무지출 소요 증가로 이어져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32.38%, 439억원이 감소한 917억원으로 대폭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 대구획 경지 정리사업(41억원 → 18억원, △23억원)
- 백운역철도변 생태공원 Green Forest 조성(25억원 → 0억원, △25억원)
- 도서종합 개발사업(270억원 → 176억원, △94억원)
- 초지대교~인천간 도로개설(130억원 → 0억원, △130억원)
-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300억원 → 33억원, △267억원)

등으로 대부분 사업완료 또는 마무리로 인해 보조금이 감소한 것으로 보여지나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보조금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기금은 전년보다 8.16%, 55억원이 감소한 621억원으로 소폭 감소하였는데, 주요 증감 사업으로는

- 노후구급차량 교체(2억원 → 7억원, 증 5억원)
-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29억원 → 0억원, △29억원)
- 사랑가꿈(사랑의 집고치기) 사업추진(0억원 → 5억원, 증 5억원)
- 국민체력증진 기반조성 시범사업(0억원 → 27억원, 증 27억원)
- 도원체육관 개보수(0억원 → 6억원, 증 6억원)
- 강화군 군민체육센터 건립 지원(16억원 → 0억원, △16억원)
- 2013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운영비(71억원 → 0억원, △71억원)
- 전국체육대회 운영지원(35억원 → 0억원, △35억원)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10억원 → 24억원, 증 14억원)
-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사업(8.1억원 → 2.7억원, △5.4억원)
-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확충(0억원 → 36억원, 증 36억원)
- 버스정보 시스템 구축(22억원 → 0억원, △22억원)

등으로 대부분 단년도 사업에 대한 일시적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어 각종 기금사업에 맞는 시민들과 밀접한 피부에 와닿는 생활 밀착형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기금 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4) 지방채

- 차입금 및 지방채증권은 8,412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66.21%인 3,351억원이 대폭 증가되었으며,
- 이중 차입금은 1,950억원으로 전년도의 3,963억원보다 50.79%, 2,013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금융기관 채권 1,700억원(△30.97%), 지방공공자금채 100억원(순증)으로 편성하였으나 비교적 이율이 낮은 정부자금 채권은 1,350억원(90%) 감소된 150억원에 불과함.
- 반면 지방채증권은 전년에 1,098억원 발행했으나 2014년에는 무려 5배인 488.49%, 5,364억원 증가된 6,462억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편성함.

<일반·특별회계 지방채 예산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지방채계	841,160	506,082	335,079	66.21
차입금	195,000	396,282	△201,282	△50.79
정부자금채	15,000	150,000	△135,000	△90.00
금융기관채	170,000	246,282	△76,282	△30.97
지방공공자금채	10,000	0	10,000	순증
지방채증권	646,160	109,800	536,360	488.49
모집공채	545,574	0	545,574	순증
매출공채	100,586	109,800	△9,214	△8.39

*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예산액

□ 201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은

- 총 8건에 4,397억원으로 이중 발행한도(2014년 발행한도 1,875억원)²¹⁾ 범위내에서 5건에 1,750억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일반회계는 2014년도 차환채 발행 627억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117억원 발행하고, 기타특별회계는 도시철도2호선 건설 319억원, 서울7호선 석남지역 연장건설 22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지역개발채권 665억원을 각각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발행한도 범위외는 3건에 2,647억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2014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비 947억원, 송도 6·8공구 기반시설 공사 700억원, 송도 11공구 매립공사 1,000억원을 발행할 계획임

<2014년도 지방채발행 계획 현황>

(단위 : 억원)

한도구분	부서명	사업명	발행계획액	자금종류	발행조건			비고
					이율(%)	상환기간	상환재원	
합계		8건	4,397					
한도내 발행계획 [5건, 1,750 억원]	일반회계	2건	744					
	예산담당관실	'14년도 일반 차환채 발행	627	금융자금(모집공채)	미정	5-10	시비	
	지역개발과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117	금융자금(모집공채)	미정	5-10	시비	
	기타특별회계	2건	341					
	도본철부	도시철도2호선 건설	319	철도채권	2.00	5만기	시비	
		서울7호선 석남지역 연장사업	22	철도채권	2.00	5만기	시비	
	공기업특별회계	1건	665					
예산담당관실	지역개발채권 발행	665	지역채권	2.00	5만기	시비		

21) 지방채발행 한도액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의 승인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상한액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이 매년 자치단체의 채무규모, 채무상환 일정 등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내에서 정함

(단위 : 억원)

한도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발 행 계 획 액	자 금 종 류	발행조건			비 고
					이율 (%)	상환 기간	상환 재원	
한도외 발행계획 [3건, 2,647 억원]	기 타 특별회계	1건	947					
	A G 본부	2014AG 경기장 건설	697	금융자금 (모집공채)	미정	5-10	시비	
			150	공자기금	3.22 (미정)	5-10	시비	기 획 재 정부
			100	지역발전	3.25 (미정)	2-5	시비	지방재정 공채회
	공 기 업 특별회계	2건	1,700					
	경제자유 구 역 청	송도 6·8공구 기반시설 공사	700	금융자금 (모집공채)	미정	5-10	시비	
송도 11공구 매립공사		1,000	금융자금 (모집공채)	미정	5-10	시비		

○ 지방채 발행액이 2009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에 동참하고자 확대 발행한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2년부터 2014AG 경기장 건설로 인한 한도외 추가 발행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2014년에는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음. 이는 2014AG 경기장, 도시철도2호선 건설 등 시 당면사업의 부족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측면도 있으나 2014년도의 채무비율이 재정위기단체 지정기준인 40%에 육박하고 있어 지방채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일반·특별회계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억원)

구 분	연도별						
	2008	2009 ²²⁾	2010 ²³⁾	2011	2012 ²⁴⁾	2013 ²⁵⁾	2014 ²⁶⁾
지방채발행 한도액(A)	2,575	2,710	2,900	2,037	1,919	2,865	1,875
발행액(B)	2,023	8,386	4,937	1,944	2,631	3,858	5,191
발행비율(%) (B/A×100)	78.54	309.46	170.24	95.43	137.09	134.66	276.85

* 2012년까지는 실제발행액, 2013년은 9월말까지 발행액, 2014년은 계획액임

22)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확대 정책에 적극 동참하면서 지방채 5,507억원 확대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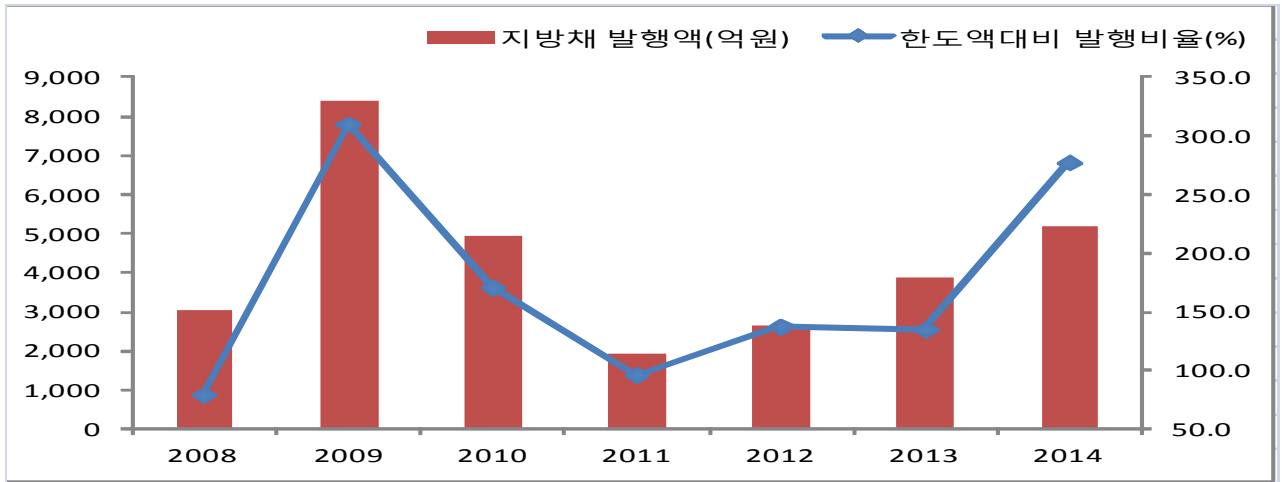
23) 2014AG 경기장 건설을 위한 지방채 3,500억원을 한도외 발행

24) 2014AG 경기장 건설을 위한 지방채 1,000억원을 한도외 발행

25) 지방채 관리계획 보고안에 의거 2013.9월말 기준 발행액으로 산정

26) 2014년 당해발행분 4,397억원에 2013년도 이월발행분 794억원을 포함한 발행 계획액임

<연도별 지방채 발행액 및 한도액대비 발행비율 추이>



- 한편 「인천시 지방채 관리계획 보고안」에 따르면 향후 채무 및 채무비율 전망은 아시안게임이 종료되는 2015년부터는 도시철도 채권 및 지역개발 채권을 제외한 기타사업의 지방채 발행을 전면 중단하고 3~4천억원에 달하는 원금 상환만을 계획하고 있어, 자칫 시재정의 경직된 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지방채 관리계획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향후 채무 및 채무비율 전망²⁷⁾>

(단위 : 억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예산규모(기금포함)	90,717	85,918	77,790	76,306	75,471	74,981
채무규모	31,022	33,385	30,194	27,313	24,807	22,456
발행액	6,196	5,191	1,098	1,098	1,098	1,098
일반회계사업 (경제자유구역포함)	1,718	2,444	-	-	-	-
AG경기장	3,380	1,741	-	-	-	-
도시철도채권	163	341	355	397	126	186
지역개발채권 등	935	665	743	701	972	912
상환액(원금)	3,195	2,828	4,289	3,979	3,604	3,449
채무비율	34.2%	38.9%	38.8%	35.8%	32.9%	29.9%
AG채무제외시	22.9%	24.9%	22.8%	21.2%	18.9%	17.0%

27) 인천광역시 2014년 지방채 관리계획 보고안(의안번호 1000호) 참조

- 아울러 지방채 발행액중 이율이 관련 조례로 2%로 고정되어 있는 매출공채(도시철도채권²⁸⁾ 및 지역개발채권²⁹⁾)는 1,006억원이고
 - 기획재정부나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직접 운영하여 비교적 이율이 낮은 공자금관리기금과 지역개발기금으로는 250억원만 발행하고 있는 반면,
 - 비교적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채가 총 발행액 4,397억원의 71.4%인 3,141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시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나 상환계획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실제로 2014년에도 4,642억원(일반차환 627억원 포함)의 고금리로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을 실시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일반 금융기관채보다 이율이 낮은 정부의 공자기금이나 지방재정공제회의 지역발전기금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지방채 조서(공사·공단 포함)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99쪽 ~ 115쪽) 참조

- 이와 관련하여 향후에 대규모로 재원이 필요한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 사업은 지난 10월에 실시된 제3차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심의결과 조건부로 심사되었고, 그 심사에 따른 조건이 '재원 마련 대책 수립 및 행정절차 이행 완료후 사업추진' 임을 감안하여 재원마련 대책으로 정부관리기금에서 운용중인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³⁰⁾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사업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기금활용 가능성 및 규모, 시기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28)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제4조(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제2항

29)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8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 제2항

30)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차입선 - 농수산물유통공사 ; '13년도 이율 - 3.0 ; 상환(거치) 기간 - 7(3)년

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186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33.84%, 2,070억원이 증가하여 편성하였으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33.18%, 294억원 증액된 1,179억원, 전입금은 24.79%, 1,097억원 증액된 5,525억원, 예탁금및예수금은 84.89%, 678억원 증액된 1,479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음.

○ 아울러 일반회계, 공기업·기타특별회계, 기금, 교육비특별회계 상호간의 전입전출에 따른 전입금은 도시철도 2호선,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등에 따른 전입금으로 24.79%, 1,097억원 증가된 5,525억원으로 편성하였음

○ 예탁금 및 예수금 수입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도시철도2호선 건설 등 대형건설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수금으로 84.89%, 679억원 증가된 1,479억원으로 편성함

<일반·특별회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예산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18,633	611,628	207,004	33.84
보 전 수 입 등	118,311	88,938	29,372	33.03
순 세계 잉 여 금	117,897	88,525	29,371	33.18
일 반 회 계	5,340	5,088	252	4.95
특 별 회 계	112,557	83,437	29,120	34.90
전 년 도 이 월 금	1	0	1	순증
융 자 금 원 금 수 입	413	413	0	0.00
내 부 거 래	700,322	522,690	177,632	33.98
전 입 금	552,472	442,723	109,749	24.79
예 탁 금 및 예 수 금	147,850	79,967	67,883	84.89

*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예산액

○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보다 33.18%나 증액된 1,179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지난 제20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한 201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이 275억원에 불과한 실정이고, 특히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무려 711억원 (-)마이너스 결산처리 되었고 금년도의 경우에도 부동산 경기침체로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또한 취득세율 인하로 인해 세수 결함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순세계잉여금의 대폭 증가는 건전재정 운용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계 근거와 대책 등에 대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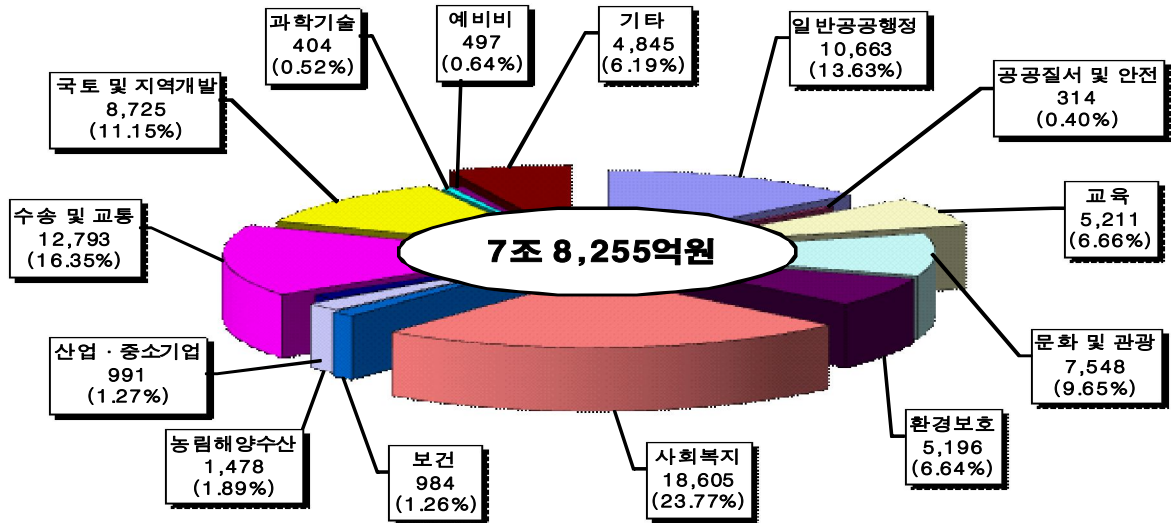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액		7,538,595	4,690,414	2,848,182
예산현액(A)		8,320,263	4,862,657	3,457,606
결산액	세입(B)	7,376,696	4,661,927	2,714,769
	세출(C)	6,842,325	4,614,373	2,227,952
세계잉여금		534,371	47,553	486,817
이월액 ³¹⁾		502,796	114,655	388,142
보조금잔액		4,070	4,024	45
순세계잉여금		27,505	△71,126	98,630

* 제209회 제1차 정례회 결산승인(2013.7.11)

31)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임.

4. 세출예산

1) 기능별 세출예산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합계	7,825,462	100.0	6,976,847	100.0	848,615	12.16
일반공공행정	1,066,292	13.63	880,678	12.62	185,614	21.08
공공질서및안전	31,417	0.40	34,476	0.49	△3,059	△8.87
교육	521,093	6.66	530,026	7.60	△8,933	△1.69
문화 및 관광	754,772	9.65	684,759	9.81	70,014	10.22
환경 보호	519,624	6.64	489,523	7.02	30,101	6.15
사회 복지	1,860,502	23.77	1,584,467	22.71	276,035	17.42
보 건	98,430	1.26	109,767	1.57	△11,337	△10.33
농림해양수산	147,752	1.89	104,659	1.50	43,093	41.17
산업·중소기업	99,128	1.27	87,176	1.25	11,952	13.71
수송 및 교통	1,279,308	16.35	1,071,546	15.36	207,761	19.39
국토및지역개발	872,465	11.15	887,996	12.73	△15,531	△1.75
과 학 기 술	40,425	0.52	16,943	0.24	23,481	138.59
예 비 비	49,733	0.64	48,840	0.70	893	1.83
기 타	484,519	6.19	445,990	6.39	38,530	8.64

*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예산액

□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 전체예산중 구성비가 가장 큰 분야는 그늘 없는 사회복지 구현을 위해 아이키우기 좋은 무상보육 도시 및 따뜻한 행복사회 만들기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로 23.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7.42%, 2,760억원이 증가된 1조 8,605억원으로 편성됨.

- 이중 아이키우기 좋은 무상보육 도시를 위해 무상보육 지원사업으로 양육수당(0~5세아 전계층) 1,030억원, 영유아보육료 2,458억원, 만 3~5세아 누리과정에 688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따뜻한 행복사회 만들기를 위해서는 기초급여 5종에 5,074억원, 기초노령연금에 2,901억원, 맞춤형 복지지원 확충을 위해 1,591억원 등을 편성함

○ 다음으로 비중이 큰 분야는 **수송 및 교통 분야**로 16.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보다 19.39%, 2,078억원이 증가된 1조 2,793억원으로 편성됨.

- 도로 건설분야에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준공금 등 1,890억원을 투자하고 인천지하철2호선 건설등 도시철도 건설분야에는 3,931억원을 편성하고, 주차장 건설 34억원, 시내버스 운영지원 1,648억원, 메트로 운영지원 419억원, 스크린도어 설치 117억원, 관내도로 포장 130억원 등 안전하고 편리한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에 4,430억원을 편성하였음

-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3.63%를 차지하고 있으며, 1조 663억원으로 전년대비 다소 큰폭인 21.08%, 1,856억원이 증가됨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고금리 차환액 증가 및 제6회 동시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금 및 실시경비³²⁾ 등으로 증가되었음

- 다음으로는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로 11.15%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년보다 1.75%, 155억원 다소 감소된 8,725억원으로 편성됨
 - 주요사업으로는 원도심 주거환경개선 478억원, 공원·녹지조성 109억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155억원 등이며,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균형있는 원도심의 전략적 개발 및 공원·녹지조성분야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 다음으로 9.65%를 차지하는 **문화및관광 분야**는 전년보다 10.2%, 700억원이 증가된 7,548억원으로 편성됨
 - 주요사업으로는 2014 AG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주경기장 건설 1,079억원, 신설경기장 107억원, 기존 경기장 개보수 103억원, AG조직위 및 장애인조직위 출연금 695억원, 서포터즈 운영 70억원 등 총 4,250억원을 투입하고,
 - 또한 문화공간 조성 47억원, 영상문화산업 지원 21억원, 문화예술 위탁운영 116억원, 인천시 체육단체 및 생활체육 활성화 335억원, 체육시설 기반구축 142억원 등 역사와 활력이 넘치는 문화·관광·체육도시를 위해 661억원을 편성함

³²⁾ 제6회 동시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금 및 실시경비 : 14,162백만원 신규편성(예산서 p253)

- 공평한 기회와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 인천 조성을 위한 **교육분야**는 전년대비 1.69%, 89억원이 감소한 5,211억원으로 편성함
 - 주요사업으로는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4,414억원, 무상급식 285억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29억원, 영어마을 운영 31억원, 학력향상선도학교 육성 20억원, 원어민 보조교사 15억원 및 국립대법인 인천대 운영비지원 300억원 등으로 편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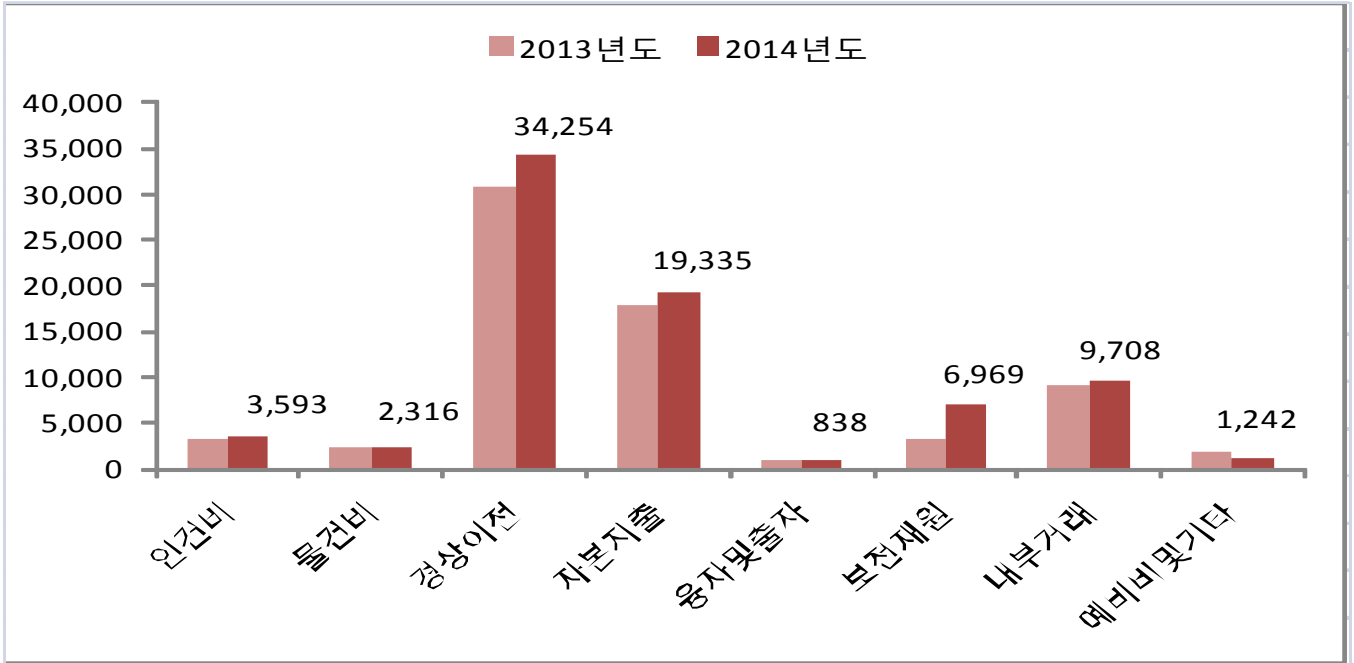
- **환경보호 분야**는 14.4월 준공예정인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건립비 262억원, 원도심 우수율제고 225억원, 급배수관 부설공사 91억원,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80억원, 군·구 하수관거 정비 78억원, 송도처리분구 하수관거설치공사 30억원 등으로 전년보다 6.15%, 301억원 증가한 5,196억원으로 편성하였음.

- 그밖에 농림해양수산 분야 1.89%, 산업·중소기업 분야 1.27%, 보건 분야 1.26%, 과학기술 0.52%, 공공질서 및 안전 0.40%, 예비비 0.64%, 기타 6.19% 구성 비율로 편성되었는 바,

- 이러한 사업들이 2014년 인천시의 최대 관심사업인 2014AG, 장애인 AG 등 대규모 행사와 연계되어 추진되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 또한 분야별 세출예산의 자원배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부합되도록 편성하여 자원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는지 자원배분의 적정성에 대하여도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2) 성질별 세출예산

<성질별 세출예산 구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	증감율
합계	7,825,462	100.0	6,976,847	100.0	848,615	12.16
인건비	359,300	4.59	335,221	4.80	24,079	7.18
물건비	231,590	2.96	239,617	3.43	△8,027	△3.35
경상이전	3,425,353	43.77	3,077,001	44.10	348,352	11.32
자본지출	1,933,537	24.71	1,786,807	25.61	146,730	8.21
용자및출자	83,794	1.07	90,830	1.30	△7,036	△7.75
보전재원	696,899	8.91	327,824	4.70	369,075	112.58
내부거래	970,792	12.41	924,084	13.25	46,708	5.05
예비비및기타	124,198	1.59	195,463	2.80	△71,265	△36.46

*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예산액

□ 인건비는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3,593억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4.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대비 7.18%, 241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5,633명³³⁾(2013.1.18일자로 인천대학교의 국립대학법인화에 따라 당초 6,243명에서 610명이 감축)에서 현재 5,686명³⁴⁾으로 53명이 증원되었으나 인건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정원 및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물건비는

- 자치단체의 행정활동 수행을 위한 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구성된 예산으로써 전년대비 3.35%, 80억원이 감액된 2,316억원으로 편성되었음.
- 특히 업무수행 경비중 기본이 되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긴축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긴축재정으로 매년 일정비율 강제 삭감 편성할 경우 자칫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능률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되었는지 감소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물건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율
물 건 비	231,590	239,617	△8,027	△3.35
일 반 운 영 비	115,075	125,485	△10,410	△8.30
여 비	6,349	6,495	△147	△2.26
업 무 추 진 비	3,888	4,048	△160	△3.96

³³⁾ 2012.11.26일 시장 제안 / 2012.12.14일 본회의 의결

³⁴⁾ 2013.11.13일 시장이 제안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율
직무수행경비	21,218	20,975	243	1.16
의회비	3,040	2,965	75	2.51
재료비	70,923	69,770	1,153	1.65
연구개발비	11,098	9,878	1,219	12.34
연구용역비	9,048	7,595	1,452	19.12
전산개발비	515	646	△131	△20.32
시험연구비	1,535	1,637	△102	△6.21

*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예산액

□ 연구개발비(연구용역비)

- 연구개발비중 전산개발비와 시험연구비는 감소한 반면, 증액된 연구용역비³⁵⁾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무려 19.12%, 14억 5,220만원이 증액된 90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바,
- 용역비 예산은 매년 의회의 예산 및 결산 심사를 통해 용역비의 과다계상 및 책임 회피성 용역, 용역결과 보고서 부실, 활용여부 등에 대하여 재론되고 있는 바, 연관성이 있는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기관간 협의를 통해 연계추진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용역결과의 효과와 활용여부 등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한편 「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된 (재)인천발전연구원(이하 '인발연'으로 표기)은 시 출연기관으로 매년 40억원이상 출연하고 있는 기관으로 주요업무³⁶⁾가 시정발전에 관한

35) 연구용역비 :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36) 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사업)

1.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개발계획과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2. 지방행정제도개선, 지방재정확충과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3. 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과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
4. 지역의 각종 경제와 사회지표의 수립
5. 지방행정에 관련된 각종 국내외 정보·자료의 수집, 관리와 출판·배포
6.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과 국제연구분야 비교검토
7.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32조제5항 관련 기능과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의 수정·보완과 평가·분석 기능 수행
8.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9. 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중·장기개발계획과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등인 기관으로 불필요하고 1회성인 연구용역보다는 48명(관리직 16 / 연구직 32)의 고급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인발연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1회성 연구가 아닌 인천에 대한 연속성 있는 연구로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에 접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높을 뿐만아니라 연구용역비를 줄이는 등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인발연의 출연금은 2009년 51억원 이었던 것이 감소하여 2014년에는 41억으로 줄어든 출연금을 현실화하여 연구원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유도하고, 외부 기관에 용역을 주기보다는 인발연 연구원들을 최대한 활용하거나 필요한 연구분야의 연구원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인발연 연구원이 추가되고 외부의 관련분야 연구원을 임시 고용하여 인건비를 줄이는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인발연 출연금 및 정책연구과제 수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건수)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출 연 금	4,057	4,400	4,100	
과제수행	31	48	29 ³⁷⁾ (상반기)	

※ 연구용역비 예산편성 현황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125쪽 ~ 177쪽 참조)

37) 2013.11월 현재 - 2014 상반기 정책연구수요 검토작업 진행중

□ 보존재원은

- 상환시기가 도래한 채무상환 소요액 원금을 상환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두배가 넘는 112.58%, 3,691억원이 증액된 6,969억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 이는 순수 상환액 2,828억원외에 고금리 지방채 차환 4,642억원(627억원³⁸⁾+4,015억원³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현재 시의 총 채무액 2조 9,404억원중 고금리인 채무가 어느 정도 인지, 이율 및 상환기간 등 부채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고금리 차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보존재원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율
보 존 재 원	696,899	327,824	369,075	112.58
통화금융기관차입금원금상환	44,266	104,281	△60,016	△57.55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	453,195	85,188	368,007	431.99
지방채증권원금상환	199,038	136,630	62,408	45.68
기타국내차입금원금상환	400	1,725	△1,325	△76.81

*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예산액

※ 지방채 조서(공사·공단 포함)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99쪽 ~ 115쪽) 참조

38) 일반 차환채 발행액(2014년 지방채 발행계획에 의거)

39) 순수 고금리 차환 발행액

□ 민간이전은

○ 전년도 예산액 대비 5.12%가 증액된 8,200억원으로써 예산의 주요 편성 세목을 살펴보면,

- 의료및구료비, 민간경상보조금은 전년대비 각각 45.39%, 10.87%씩 대폭 감소하였는데, 시의 민간이전 경비로 사업이나 행사를 계획하고 있던 개인이나 단체의 경우 사업추진에 어려움과 그 사업 수행으로 수혜를 받는 시민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급격한 축소보다는 행정청에 대한 신뢰보호와 민간단체 등의 자생력을 감안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반면, 민간행사보조금, 민간위탁금 및 사회복지보조금 등은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각각 11.02%, 10.89%, 14.86%로 10%이상씩 대폭 증가하였는데, 민간이전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제1항 제4호⁴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⁴¹⁾에 따라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개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경비'로 규정하고 있어 지원사업들이 이에 해당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40)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제1항 제4호 :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 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또한 관련 기준⁴²⁾에 따르면 매년 동일·반복적인 사업의 경우 ‘지원 기간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 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여부 판단 후 보조’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규정에 따라 지원 중단, 성과평가, 지원여부 판단 및 보조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항목은 적절한지,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민간이전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율
민 간 이 전	820,035	780,097	39,938	5.12
의 료 및 구 료 비	369	675	△307	△45.39
민 간 경 상 보 조 금	83,537	93,721	△10,184	△10.87
사 회 단 체 보 조 금	1,620	1,620	0	0.00
민 간 행 사 보 조 금	5,037	4,538	500	11.02
민 간 위 탁 금	442,925	399,422	43,503	10.89
연 금 지 급 금	534	530	4	0.68
이 차 보 전 금	29,500	29,500	0	0.00
운 수 업 계 보 조 금	239,151	234,975	4,176	1.78
사 회 복 지 보 조	17,362	15,116	2,246	14.86

*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예산액

42)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013.7월 안전행정부) p57~p59

□ 출연금 및 출자금은

- 지방재정법 및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기관·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출자·출연하는 예산으로써 이중 출연금은 2013년도는 전년도대비 97.01%가 증가되었다가 2014년도는 10.07%로 증가폭이 다소 낮아지기는 했으나 출연금 규모가 2011년 출연규모의 2배가 넘는 1,876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출자금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13.47% 증가하고 2011년과 비교하면 5배 가까운 538억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시의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지원이 수년 사이에 대폭 증가한 사유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 운영 성과와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⁴³⁾에 따라 평가결과를 성과급 지급률에만 반영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거나 기관장의 연봉계약시 평가결과를 일정비율 반영하는 등 경영 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연도별 출연·출자금 예산편성 증감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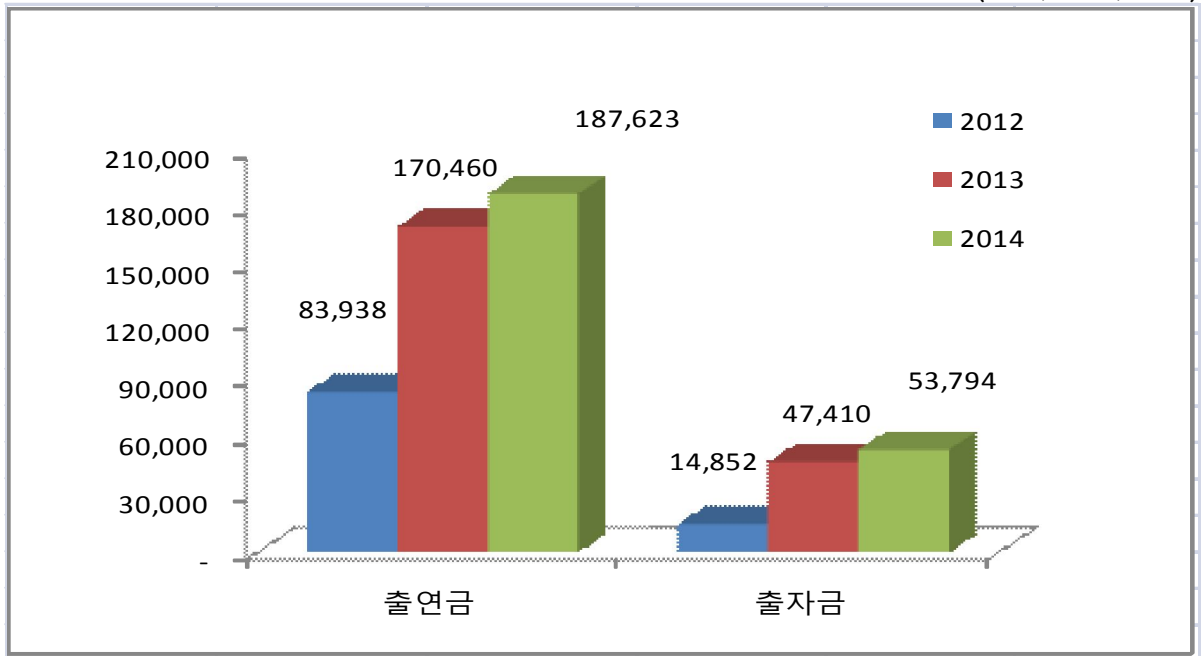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

회 계 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예산액	증감율 ('11대비)	예산액	증감율 ('12대비)	예산액	증감율 ('13대비)
합 계	101,586	98,790	△2.75	217,870	120.54	241,417	10.81
출연금	90,086	83,938	△6.83	170,460	103.08	187,623	10.07
출자금	11,500	14,852	29.15	47,410	219.22	53,794	13.47

43) 인천광역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제17조(경영평가의 결과조치) 제4항 시장은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을 차등 지원하거나 공사·공단의 사장·이사장 및 출자·출연기고나의 장의 연봉계약 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조언·권고·경고 등을 할 수 있다.

<출연금 및 출자금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출연금 및 출자금 예산편성 현황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355쪽 ~ 379쪽) 참조

3) 재정 투·융자사업

□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는

- 지방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의 재정적 타당성, 재원대책 등을 중점 심사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사업우선 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써,
- 총사업비가 40억원이상 신규사업, 2개이상 시·도와 관련된 총사업비 10억원이상 신규 투자사업,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및 홍보관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효율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방재정법 제37조⁴⁴⁾에 규정되어 있음.

□ 2013년도 투·융자사업 심사는

- 중앙심사 14건, 자체심사 74건 등 총 88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적정 23건, 조건부 40건, 재검토 24건 및 부정적 1건으로 심사되었음.

44) 지방재정법 제37조(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 따라서 4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 사업 및 5억원 이상의 공연, 축제행사에 대하여 2014년도 당초예산에 투·융자사업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타당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의를 엄격히 실시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을 적시에 편성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심사결과 재검토, 부적정, 반려로 심사의견이 나온 사업의 예산반영여부와 조건부인 사업의 경우는 조건을 이행한 후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함.

※ **2014년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반영 현황**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417쪽 ~ 452쪽) 참조

4) 계속비사업

□ 201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계속비조서 사업은

- 일반회계 22건, 기타특별회계 8건, 공기업특별회계 45건으로 총 75건으로 신규사업으로 일반회계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사업 등 3건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송도6·8공구 U-city 관로구축공사 등 7건 등 총 10건임.
- 투자계획 및 총 사업비 등이 변경된 사업은 일반회계 22건, 특별회계 32건 총 54건으로 전체 계속비사업의 72.0%가 변경되었으며, 변경 사유는 대부분 총사업비 및 투자계획 변경, 사업 기간 변경,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업비의 변동으로 인하여 변경되었다고 사료됨.
- 계속비는 공사나 제조 기타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기간에 걸쳐 지출할 수 있으므로,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나 사업관리를 위해서 상당히 유용한 제도임.
- 따라서,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계속비 사업이 사업계획 변동으로 연도별 계획액이 변경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사업추진 실적이 미진하여 사업비가 이월되거나 재원부족 사유로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또한 신규사업인 경우 한정된 재원을 분산 배분으로 인하여 투자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계속비사업 변경 및 신규사업 주요 현황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453쪽 ~ 476쪽) 참조

5)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 특별회계는

- 지방재정법 제9조 및 기타 개별법령에 의한 특정 세입·세출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특정 사업을 운영할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조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인천시의 경우 4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15개의 기타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음
-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2조 5,769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2.36%, 2,834억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음.

□ 공기업특별회계는

- 전년대비 3.29%, 395억원 증액된 1조 2,422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이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본부청사 건립 준공, 노후관 교체 등 원도심 우수율 제고 등 시설확충으로 전년보다 8.5% 늘어난 2,887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도 하수관거 정비 및 신규 설치 등으로 263억원이 증가된 1,770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음
- 반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용지판매수익이 대폭 줄어든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는 0.83% 감소한 5,698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또한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의 감소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도 46억원이 감액된 2,067억원으로 편성함.

□ 기타특별회계는

- 전년대비 22.36%, 2,439억원 증액된 1조 3,347억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는데, 이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서울7호선 석남연장,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 수인선 학익역사 건설 등으로 전년대비 67.37%, 1,885억원 대폭 증액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와 2014AG의 성공적인 개

최를 위한 건설비 및 운영비 등이 전년보다 542억원 증액된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로 인해 증액되었음.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특별회계	2,576,923	2,293,516	283,407	12.36
공 기 업 특 별 회 계	1,242,217	1,202,668	39,549	3.2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88,671	266,050	22,621	8.5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77,021	150,735	26,286	17.44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569,840	574,635	△4,795	△0.83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06,685	211,249	△4,564	△2.16
기 타 특 별 회 계	1,334,706	1,090,848	243,658	22.35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8,543	22,431	△13,888	△61.9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86,608	282,835	3,773	1.33
검단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10	178	32	17.90
당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0	144	△144	순감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33,241	32,004	1,237	3.86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4,016	108	3,907	3603.85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74	55	19	34.33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35,228	32,465	2,763	8.51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7,400	46,600	800	1.72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468,210	279,745	188,465	67.37
도시개발특별회계	11,580	5,610	5,970	106.4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128	841	△713	△84.78
기반시설특별회계	2,140	2,040	100	4.90
지하도상가특별회계	12,307	10,058	2,249	22.36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	425,020	370,782	54,239	14.63

*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예산액

- 2014년에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의 특별회계는
 - 자체재원 부족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규모를 보면 전년도 대비 37.2%, 1,246억원이 증가한 4,596억원으로 2013년도 예산안 2조 1,542억원 대비 전입금 비율이 전년도의 18.3%에서 21.3%로 증가하고 있어,
 -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하는 것이 특별회계인바 일반회계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수익이나 자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입 다변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특별회계예산 중 일반회계 전입금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14년도 예산규모	일반회계 전입금				전입금 비율
		'14년도	'13년도	증감액	증감율	
합 계	2,154,219	459,631	335,040	124,591	37.2	21.3
상 수 도 사 업	288,671	5,713	6,090	△377	△6.2	2.0
경제자유구역사업	569,840	66,645	41,989	24,656	58.7	11.7
의료급여기금	286,609	52,905	56,348	△3,443	△6.1	18.5
도시교통사업	35,228	10,324	9,461	863	9.1	29.3
광역교통시설	47,400	7,300	0	7,300	순증	15.4
도시철도사업	468,210	176,680	126,467	50,213	39.7	37.7
오류지구구획정리	33,241	1,413	485	928	191.3	4.3
아시아경기대회	425,020	138,651	94,200	44,451	47.2	32.6

* 전입금 지원이 없는 회계는 제외

6) 인천시 주요사업(3-CARE, 보육·교육·일자리)관련 예산

□ 첫째, 보육분야로

- 아이키우기 좋은 무상보육 도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무상보육 지원사업은 총 4,196억원 규모로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양육수당 1,030억원(국791/시239), 영유아보육료 2,458억원(국1,964/시494), 만 3~5세아 누리과정 688억원, 법정저소득층 아동 지원 등에 20억원등이 지원되고 있음

- 특히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11년 광역지자체중 처음으로 제정·시행하여 지난 8월에 발표된 통계청의 '2012 출생통계 결과'에 따르면 인천의 출산증가율이 전국평균 2.8%보다 두배가 넘는 6.4%(출생아수 27,800명)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국시·도중 제주도(6.5%)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또한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개정을 통하여 2012.3월부터 전국 최초로 만4세아 무상보육을 실시하여 9,000세대가 혜택을 보는 등 지원사업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보육관련 예산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4년말 인천의 인구가 3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성과가 크다고 할 수 있으나,

- 시의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선별적 지원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사료됨

□ 둘째, 교육분야는

- 공평한 기회와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 인천조성을 목표로 총 5,15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먼저 교육청의 법정전출금 4,414억원의 지원 이외에 무상급식 285억원, 학력향상선도학교 육성 20억원(10개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9억원, 영어마을 운영 31억원, 잠재성장형 고교지원(15개 고교) 7억 5천만원 등을 편성함
- 인천의 학력수준이 전국에서 하위권에 있고, 대학입시 성적이나 진학률이 낮아 학력향상선도학교 육성과 잠재성장형고교 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큰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두사업의 경우 특정학교만의 지원으로 특혜논란이 있을 수 있어 선정방법, 결과, 지원현황 및 성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사업의 효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정책개발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교육정책 방향설정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셋째, 일자리 분야는

-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자리 창출 분야는 총 330억원 규모로 지원될 계획으로 먼저 지역공동체·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54억원을 투자하고 청년창업 육성을 위해, 먼저 2014.4월 준공예정인 제물포스마트타워 건립에 204억원과 타워 및 일자리지원본부 운영에 15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또한 400명의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6억원, 청년 직업훈련에 11억원, 취업알선에 5억원 등이 투자될 계획임
- 통계청 2013.10월 고용률을 보면 인천시의 경우 전국평균인 60.5%를 상회하는 61.9%로 특·광역시중 가장 높은 고용률을 나타내고 있고, 실업률은 3.6%로 전국 시도중 가장 높은 수준이나 2013.1월 실업률 5.7%보다는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자리 창출사업의 성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 되고 있다고 할수 있을 것임.

- 다만,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해 관련 부처인 고용노동부나 유관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 기술인력개발센터 등과의 긴밀한 협조로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및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아울러, 전국평균보다 2%이상 높은 64.3%의 인천시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시민들의 일자리수가 많이 늘어나 경제활동에 나서고 있음을 알수 있어, 이제는 일자리 수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에도 관심을 가질 시기라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심사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2013.10월 현재 시도별 경제활동인구 및 실업률·고용률 현황>

(단위 : 천명 / %)

시도별	15세이상 인구	경제 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계	42,218	26,268	15,949	62.2	2.8	60.5
서울	8,517	5,340	3,178	62.7	3.4	60.5
부산	2,950	1,698	1,252	57.5	3.5	55.5
대구	2,074	1,238	836	59.7	3.1	57.8
인천	2,377	1,527	849	64.3	3.6	61.9
광주	1,247	740	507	59.3	2.6	57.8
대전	1,278	764	514	59.8	2.1	58.6
울산	933	559	374	59.9	2.3	58.6
경기도	10,031	6,300	3,731	62.8	2.5	61.2
강원도	1,251	739	512	59.1	2.3	57.7
충청북도	1,301	824	477	63.3	1.7	62.2
충청남도	1,832	1,208	624	65.9	2.6	64.2
전라북도	1,511	916	595	60.6	1.5	59.7
전라남도	1,486	951	536	64.0	1.7	62.8
경상북도	2,250	1,471	779	65.4	3.3	63.2
경상남도	2,711	1,677	1,034	61.9	2.0	60.6
제주도	466	315	151	67.6	1.3	66.7

7) 주민참여예산은

- 2011년 8월 「지방재정법⁴⁵⁾」의 개정에 따라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인천시에서도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2014년도 예산안에 총 38개 사업, 58억원을 편성한 주민참여예산을 제출하였음.
-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안 편성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필요하다고 느끼고 공감하는 사항들을 예산편성안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로 재정의 직접민주주의 측면에서 매우 유익한 제도라고 판단되나 일부 주민들만의 의견수렴에 그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어 제도의 취지와 참여 방법 등을 알려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지방의회는 헌법⁴⁶⁾에 근거해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이고, 지방자치법⁴⁷⁾에 예산의 심의·확정 사항은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회의 심의권이 주민참여예산제 의견을 참고할 수는 있어도 이에 구속되지는 않더라도 성격상 의회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 소극적으로 심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재 조례⁴⁸⁾에서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조항에 대한 사업분야, 금액한도 등 예산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결과 및 이에 따른 예산반영현황·사업계획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555쪽 ~ 580쪽) 참조

45)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46) 헌법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7)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48)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6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 제출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8) 성인지예산은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임

<성인지예산서 작성대상 사업>

구분	대상 사업	비 고
필수	○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자치단체시행계획 추진사업
	○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성별영향분석법(12.3.16)에 따른 분석평가대상사업
선택	○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단체장 공약사업 등 지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성인지예산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총 계	103	145,604	145,586	18	0.01
일 반 회 계	103	145,604	145,586	18	0.01
특 별 회 계	0	0	0	0	0.00

- 2013년인 올해부터 처음 시작된 제도로 2014년에는 103개 사업에 1,456억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전년도 보다 0.01%, 18백만원 증가된 규모로 거의 변동이 없고, 또한 보건복지국과 여성가족국이 사업개수로는 54건으로 전체 사업의 52.4%로 절반이 넘고, 예산규모는 72.0%, 104,844백만원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이는 제도시행 초기이기는 하지만 성인지예산의 기본목적인 성평등이 아닌 복지·여성중심의 예산편성제도로 오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실국별 안배는 물론 다양한 사업들이 발굴·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성인지예산 조직별 현황>

(단위 : 개 / 백만원 / %)

구 분	개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103	145,604	100.0	145,586	100.0	18	0.01
대 변 인 실	2	859	0.59	774	0.53	84	10.87
감 사 관 실	1	17	0.01	18	0.01	△1	△7.78
교 육 기 획 관 실	1	196	0.13	230	0.16	△35	△15.00
국 제 협 력 관 실	2	118	0.08	134	0.09	△16	△11.89
소 통 기 획 관 실	1	93	0.06	14	0.01	79	568.71
기 획 관 리 실	2	434	0.30	455	0.31	△21	△4.60
경 제수 도추진본부	6	14,518	9.97	11,898	8.17	2,620	22.02
안 전 행 정 국	4	1,253	0.86	1,318	0.91	△65	△4.93
보 건 복 지 국	24	61,940	42.54	52,936	36.36	9,004	17.01
여 성 가 족 국	30	42,904	29.47	38,689	26.57	4,216	10.90
건 설 교 통 국	3	4,457	3.06	6,607	4.54	△2,151	△32.55
문 화 관 광 체 육 국	10	4,897	3.36	11,241	7.72	△6,344	△56.43
도 시 계 획 국	2	323	0.22	38	0.03	286	760.93
환 경 녹 지 국	9	3,169	2.18	8,990	6.17	△5,820	△64.74
항 만 공 항 해 양 국	3	9,332	6.41	10,964	7.53	△1,633	△14.89
인 재 개 발 원	1	317	0.22	295	0.20	22	7.37
종합문화예술회관	1	652	0.45	852	0.59	△200	△23.47
시 립 박 물 관	1	127	0.09	134	0.09	△7	△5.27

9)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관련

○ 인천시가 2013년에 이어 2014년에 원도심 활성화 대책으로 추진하는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8개구 전체에 걸쳐 13개 사업에 389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함

<2014년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 별	구 역 명	주요 사업내용	사업비		
			계	시비(9)	구비(1)
8개구	13개 사업		38,915	35,023	3,892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공동이용시설 설치, 마을벽화, 꽃길조성, 방법시설, 가로환경정비 등	2,500	2,250	250
동구	배다리	복합문화공간, 홍보관, 주차장 등	2,800	2,520	280
남구	학골마을	공동이용시설 설치, 골목길정비 등	1,000	900	100
	석정마을	공동작업장, 주민사랑방, 주민체육시설 설치, 재난위험 구조물 정비 등	3,100	2,790	310
	제물포 북부역	공원·쉼터 조성, 공부방,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 마을수직정원 조성 등	1,600	1,440	160
연수구	농원마을	공동이용시설, 소공원, 주차장, 쓰레기공동집하장, 골목길정비, 담장녹화, 지붕개량	3,970	3,573	397
	청능마을	마을회관 리모델링, 쓰레기공동집하장, 방법시설, 가로환경개선 등	1,645	1,480	165
남동구	간석자유시장주변	주차장, 공동이용시설(경로당), 도로정비 등	2,200	1,980	220
부평구	동암초교 주변	공동이용시설, 담장정비, 도로정비 등	4,300	3,870	430
	부평고교 주변	공동이용시설, 담장정비, 도로정비 등	3,700	3,330	370
계양구	계양문화회관 동측	주차장설치(54면), 소공원조성, CCTV설치(10개소)	3,800	3,420	380
서구	가정여중 주변	공동이용시설, 도로정비, 벽화그리기 등	3,300	2,970	330
	신현동 회화나무골	공원, 공동이용시설, 주차장, 방법시설, 도로정비 등	5,000	4,500	500

- 지난 5월 제1회 추경 예산으로 편성된 451억원의 원도심 활성화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구에 대한 사업비 집행액이 10%에도 훨씬 못미치는 27억원에 불과하고 8개사업 모두 정비계획수립 용역중에 있는 실정이며, 예산편성 시점에 사업규모나 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선반영 함으로써 451억원이라는 재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이월되거나 불용될 위기에 처해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 2014년도에 추진코자하는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도 현재 사업대상지만 확정된 상태로 구체적인 계획 없이 350억원의 시비가 투입될 경우 현장여건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되기 보다는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에 맞춰 사업이 진행되는 등 문제의 소지가 많은 바, 사업계획이 구체화 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재정지원 규모 및 시기를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을 위해 설치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의 경우 2014년에 경우 250억원이 넘는 조성액이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적립만 되고 있는 실정에서 추가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원도심 활성화사업 2013년도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사업계획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627쪽 ~ 630쪽) 참조

1. 중점 심사내용

- 소통기획관실 사업비가 전년에 비해 50% 정도 증가했는데 증가사유, 타부서와의 형평성 및 재원배분의 적정성 등
- 소셜빅데이터 분석서비스 사용료 신규편성 사유 및 사업내용 등
- 평가조정담당관실 소관 예산이 2배 가까이 증액된 사유 및 송도1공구공유재산 회계이관에 따른 토지대금 납부 사유
- 재정의 어려움으로 행사운영비를 줄이고 있는 입장에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육성 워크숍을 편성한 사유 및 사업의 필요성
-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개최 시기 등 실태
-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교육지원사업을 결정하는데 결정사항이 예산반영에 대한 강제성이 있는지
- 공무원의 건강검진비용 지원 방법 및 실태 등
- 9.15기념 제33회 초·중·고교 역전경주대회 행사 규모, 시행주체, 지원단체 및 예산액으로 행사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 일부 실국의 경우 상임위에서 증액 및 신규편성사업에 대한 건의가 많은데 이에 대한 재원대책은 무엇인지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위원회 운영 현황 및 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의 예산반영 여부 및 추진 계획
- 인천그린뷰티박람회 사업비가 상임위에서 50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 사업성격, 참여학교 현황 및 추진근거 등
- 상임위 예비심사시 신규편성 건의된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화합사업 및 보훈복지 문화대학 운영 사업의 내용 및 추진사유

- 청소년 성문화박람회 사업의 추진방법, 사업 필요성 및 학교 교육과의 중복여부 등
- 제출된 자료가 대부분 개요만 기술되는 등 대부분 불성실하게 작성되고 있는 바 요구자료 제출시 있는 그대로 상세하게 제출바람
- 미산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지원 사업의 국비 지원 여부, 교육청과의 비용부담 사항 및 시기 적절성 등
- 하늘고 기숙사건립 지원 사업개요, 시급성 및 공항공사가 비용부담을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지 등
- 최근 미세먼지문제, 학교 집단 식중독 방지 등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한 대책, 사업비 편성 여부 및 지속적으로 사업이나 정책을 개발 추진 바람
- 2014 인천송도마라톤대회 및 인천월드인라인킥 2014대회 사업비 상임위 증액 사유 및 참가자들에게 참가비도 별도 받아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지원하는 사유 등
- RCE(유엔지속가능발전지원센터) 운영방법 및 통영 등 중소도시에서도 10억원등 대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는바 우리시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 장애학생 통합교육지원 사업이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지원이 전혀없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 언론사관련 각종 행사의 경우 형평성있게 안배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 마련
- 문화 스포츠 및 국제기구 유치 지원의 금년도 추진 사업 현황 및 14년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 UN 관련 국제기구의 지원규모의 적정성 및 지원에 따른 인천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 제53차 동양 및 동남아 라이온스 대회 행사지원의 사업성격, 규모, 인천 지역업체 참여 현황 및 참여확대 방안 강구 등
- 장수배수지 내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사업비 증액 필요성 및 조성규모, 이용현황 및 시급성 등
-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지원 및 시정홍보비관련 선수단·사무국 운영 현황, 재정실태 및 운영비 절감 방안 등
- 인천그린뷰티박람회 사업성격 및 관련 부서간 중복투자 여부 등
- 세입규모가 8천억원 정도 증가됐는데 세수추계의 적정성 등
- 의료원 기능보장 증액사유 및 국비 지원비율 등
- 생활체육 관련 예산지원이 생활체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매년 줄고 있는데, 그 사유 및 대책은
- 충장공 어재연 장군 충장사 건립 토지매입비 필요성 및 기념사업의 진행상황, 현실태
- 대·소공연장 인터컴 시스템 구입의 필요성, 시급성 및 미설치시 문제점 등
- 세입예산과목 체계 개편에 따라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지급이 어려운 동구와 용진군의 경우 군구에서의 교육경비보조가 불가할 실정인데 보조규모 및 이에 대한 대책은
- 재향군인회의 안보견학 재정지원이 대폭 줄었는데 사유와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 아시아경기장건설관련 지방채 상환이자중 고금리 차환 규모, 이자 부담 감소방안 및 향후 대책 등
- 학교용지분담금 내년도 예산 미반영 사유 및 향후 계획은
- 축제관련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신규 행사도 많은 반면 문화재단 출연금은 매년 줄고 있는데 그사유와 대책 및 1회성

행사보다는 내실 있는 사업에 지속 투자 방안 강구

-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비관련 준공영제 운영실태 및 증액사유 등
- 시각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유도점자블럭 등 관련예산을 적극 지원하여 불편이 없도록 대책마련 강구 등
- 일반회계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각종 축제 등을 경제청 특별회계로 추진하는 방안 등 강구
- 강화 고려궁지 특화가로 조성사업이 현재 사업진척이 느린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
- 불법광고물 개선사업비의 대폭 증액 사유 및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 필요성 및 방안 강구
- 투자유치담당관실 예산이 대폭 축소된 사유와 원도심 지역에 대한 투자유치 현황, 문제점 및 대책은
- 아르바이트 대학생 활동 지원비 규모가 축소된 사유, 대학생 참여 현황 및 지원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 청년창업 허브조성, 부평역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 및 청천농장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의 사업위치, 상임위 삭감 사유, 삭감시 사업추진 가능여부 등
- 인천시 지역화폐 시범사업의 사업성격, 타시도 사례, 추진주체,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
- 인삼명품화 사업, 농산물유통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의 사업대상, 위치, 지원방법 및 효과 등
-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대상, 사업위치 및 도시가스 사업자와의 지원중복 여부 등
-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용역 대행사업비의 사업성격, 편성사유 및 용역내용 등

- 수산물하역시설 설치 지원 및 1.2톤 냉동탑차 구입비 지원근거, 지원지역 및 운영 방안 등
- 경제청 대화협력 지원 및 운영 사업비 성격, 사용처 및 계획 등
- 로봇랜드 조성 및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 현재 진행상황, 추진계획 및 현재 사업 진척도 등
- 원도심 활성화사업 국비 지원 가능여부, 13개 지역으로 동시추진에 다른 문제점 및 팽이부리마을 조성처럼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
- 원도심 저층주거지 사업 추진시 마을만들기, 살기좋은 아파트 사업 등과 연계되어 추진하는 방안 강구
- 택시요금이 인상됐는데 택시카드 지원금 증감여부 및 향후 대책
- 제물포 스마트 타운 입주 기관 현황 및 일자리 창출사업의 내실화
- 경제청 국고보조금 반환금 상임위 삭감 사유와 삭감시 문제점 및 반환시기 조정가능 여부
- 생활형 나대지 발생면지 관리 사업의 위치, 효과 및 문제점
- 일반회계 세입규모 증가 적정성, 취득세 및 지방소비세 징수전망
- DCRE 세금 추징 현황, 내년도 징수 가능성 및 채권추심이나 과징금 등 구체적 압박수단 강구

2. 토론요지

- 1) 찬성 : 없음
- 2) 반대 : 이재병, 윤재상, 신동수, 권용오, 정수영, 이한구, 조영홍, 허회숙 위원

3. 심사결과 : 수정가결

3-1. 세 입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심사결과 예산액
		감 액	증 액	
합 계	7,825,462,242	△3,512,500	15,332,000	7,837,281,742
일 반 회 계	5,248,539,661	△59,500	15,332,000	5,263,812,161
특 별 회 계	2,576,922,581	△3,453,000	0	2,573,469,581
공기업특별회계	1,242,217,000	△1,453,000	0	1,240,764,000
상수도사업	288,670,989	0	0	288,670,989
하수도사업	177,020,773	△953,000	0	176,067,773
경제자유구역	569,839,972	△500,000	0	569,339,972
지역개발기금	206,685,266	0	0	206,685,266
기타특별회계	1,334,705,581	△2,000,000	0	1,332,705,581
학교용지부담금	8,543,072	0	0	8,543,072
의료급여기금	286,608,499	0	0	286,608,499
검토지구 ² 지구획정리사업	209,690	0	0	209,690
온토지구 ^류 지구획정리사업	33,241,028	0	0	33,241,028
마토지구 ^전 지구획정리사업	4,015,750	0	0	4,015,750
불토지구 ^로 지구획정리사업	74,138	0	0	74,138
도시교통사업	35,228,054	0	0	35,228,054
광역교통시설	47,400,000	0	0	47,400,000
도시철도사업	468,210,006	0	0	468,210,006
도시개발	11,580,000	0	0	11,580,000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128,000	0	0	128,000
기반시설	2,140,000	0	0	2,140,000
지하도상가	12,306,896	0	0	12,306,896
아시아경기대회	425,020,448	△2,000,000	0	423,020,448

3-2. 세 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심사결과 예산액
		감 액	증 액	
합 계	7,825,462,242	△42,519,647	54,339,147	7,837,281,742
일 반 회 계	5,248,539,661	△28,598,552	43,871,052	5,263,812,161
특 별 회 계	2,576,922,581	△13,921,095	10,468,095	2,573,469,581
공기업특별회계	1,242,217,000	△11,921,095	10,468,095	1,240,764,000
상수도사업	288,670,989	△695,320	695,320	288,670,989
하수도사업	177,020,773	△3,177,000	2,224,000	176,067,773
경제자유구역	569,839,972	△8,048,775	7,548,775	569,339,972
지역개발기금	206,685,266	0	0	206,685,266
기타특별회계	1,334,705,581	△2,000,000	0	1,332,705,581
학교용지부담금	8,543,072	0	0	8,543,072
의료급여기금	286,608,499	0	0	286,608,499
검토지구 ² 지구획정리사업	209,690	0	0	209,690
오투지구 ² 지구획정리사업	33,241,028	0	0	33,241,028
마토지구 ² 지구획정리사업	4,015,750	0	0	4,015,750
불로지구 ² 지구획정리사업	74,138	0	0	74,138
도시교통사업	35,228,054	0	0	35,228,054
광역교통시설	47,400,000	0	0	47,400,000
도시철도사업	468,210,006	0	0	468,210,006
도시개발	11,580,000	0	0	11,580,000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128,000	0	0	128,000
기반시설	2,140,000	0	0	2,140,000
지하도상가	12,306,896	0	0	12,306,896
아시아경기대회	425,020,448	△2,000,000	0	423,020,448

3-3. 세입 심사내역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심사결과 예산액
		감 액	증 액	
총 계	7,825,462,242	△3,512,500	15,332,000	7,837,281,742
일 반 회 계	5,248,539,661	△59,500	15,332,000	5,263,812,161
보 건 복 지 국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국고보조금)	992,000	0	1,000,000	1,992,000
환 경 녹 지 국				
환경문화예술보급사 업(국고보조금)	59,500	△59,500	0	0
항 만 공 항 해 양 국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 타당성 및 개발 구상용역(일반부담금)	0	0	400,000	400,000
도 시 계 획 국				
반환공여구역 등 주 변지역 개발사업(국 고보조금)	30,000,000	0	12,932,000	42,932,000
보 건 복 지 국				
송도석산개발 보조금 반납(국고보조금)	0	0	1,000,000	1,000,000
특 별 회 계	2,576,922,581	△3,453,000	0	2,573,469,58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77,020,773	△953,000	0	176,067,773
수도권매립지 하수슬 러지 기존고도화처리 시설(수도권3단계)	953,000	△953,000	0	0
경 제 자 유 구 역 특 별	569,839,972	△500,000	0	569,339,972
1공구 상업용지 일반 회계 전입금	57,051,168	△500,000	0	56,551,168
아 시 아 경 기 대 회 특 별	425,020,448	△2,000,000	0	423,020,448
일반회계 전입금	138,651,008	△2,000,000	0	136,651,008

3-4. 세출 심사내역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심사결과 예산액
		감 액	증 액	
합 계	7,825,462,242	△42,519,647	54,339,147	7,837,281,742
일 반 회 계	5,248,539,661	△28,598,552	43,871,052	5,263,812,161
의회사무처	11,696,726	△19,600	0	11,677,126
시설물유지관리 -본회의장 마이크 구입	19,600	△19,600	0	0
대면인실	10,982,526	△105,000	100,000	10,977,526
인천언론 발전사업 지원	100,000	△5,000		95,000
신문매체를 통한 시정광고	500,000	△50,000	50,000	500,000
방송기획광고	630,000	△50,000	50,000	630,000
감사관실	414,688	△3,000	29,840	441,528
부조리신고 보상금	5,000	△3,000	0	2,000
공직감찰 차량 렌트(승용차)	5,880	0	6,300	12,180
공직감찰 차량 렌트(보험료)	300	0	300	600
공직감찰 렌트 차량유지비	3,240	0	3,240	6,480
공직감찰 및 민원조사 활동 추진(국내여비)	8,540	0	14,000	22,540
급량비(사무관리비)	7,700	0	6,000	13,700
교육기획관실	516,040,645	0	1,500,000	517,540,645
초·중·고 교육지원(동구)	0	0	1,000,000	1,000,000
초·중·고 교육지원(웅진군)	0	0	500,000	500,000
소통협력관실	302,749	△16,700	2,700	288,749
소통리더십 아카데미 운영	20,000	△10,000	0	10,000
소통행정 추진(시책추진업무 추진비)	4,050	0	2,700	6,750
시민사회단체와 소통대화(시 책추진업무추진비)	2,700	△2,700	0	0
시민참여정책위원회 자문수당	4,000	△4,000	0	0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심사결과 예산액
		감 액	증 액	
기획관리실	875,834,944	△700,000	7,106,285	882,241,229
예비비	49,733,432	0	7,106,285	56,839,717
민선5기 핵심시정 시책발굴 추진	300,000	△100,000	0	200,000
문화스포츠 및 국제기구 유 치지원	300,000	△100,000	0	200,000
송도1공구 공유재산 회계이 관에 따른 토지대금 납부	57,051,168	△500,000	0	56,551,168
안전행정국	171,503,891	△127,852	326,000	171,702,039
건강검진비용 지원	350,000	0	120,000	470,000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장애 인 고용부담금	75,903	△10,000	0	65,903
방문객 대리주차서비스사업	9,852	△9,852	0	0
아르바이트 대학생 활동 지원	146,880	0	200,000	346,880
아르바이트 대학생 활동 산 재보험료	1,469	0	2,000	3,469
아르바이트 대학생 활동 고 용보험료	2,938	0	4,000	6,938
제53차 동양 및 동남아 라 이온스 대회 행사지원	200,000	△50,000	0	150,000
통일관 민간위탁관리	158,000	△38,000	0	120,000
청사환경개선공사	250,000	△20,000	0	230,000
소방안전본부	168,952,353	△110,000	110,000	168,952,353
소방헬기보험료 (BELL230,AW139)	1,518,128	△110,000	0	1,408,128
산소방 설치(남동소방서)	0	0	30,000	30,000
산소방 설치(계양소방서)	0	0	30,000	30,000
다목적 훈련장 설치 실시설 계비(남부소방서)	0	0	50,000	50,000
보건복지국	589,033,237	0	2,515,248	591,548,485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3,140,620	0	196,920	3,337,540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심사결과 예산액
		감 액	증 액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678,352	0	55,328	733,680
장애인단체 사업 지원	1,159,000	0	91,000	1,250,000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125,000	0	125,000	250,000
의료원 기능보강	1,984,000	0	2,000,000	3,984,000
인천그린뷰티박람회	200,000	0	6,000	206,000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 관 관련사업	0	0	21,000	21,000
보훈복지 문화대학 운영	0	0	20,000	20,000
여성가족국	1,018,709,414	0	206,000	1,018,915,414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 건비 지원	140,000	0	196,000	336,000
청소년성문화박람회	0	0	10,000	10,000
문화관광체육국	194,260,460	△760,000	2,683,044	196,183,504
영상위원회 지원	700,000	0	100,000	800,000
2014 인천송도마라톤대회	100,000	△100,000	0	0
음악 불꽃 축제	100,000	△100,000	0	0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	1,000,000	0	200,000	1,200,000
인천 전국무용제 개최	200,000	0	100,000	300,000
순회사서 지원	350,000	0	168,000	518,000
강화고려역사재단 운영 및 사업비	500,000	0	30,000	530,000
2014AG 대비 시티투어 확 대 운영	300,000	0	100,000	400,000
계양체육관/양궁장 위탁	2,292,274	△200,000	0	2,092,274
문학경기장 위탁	1,216,803	△300,000	0	916,803
인천코레일 축구단(N리그) 운영비	60,000	△60,000	0	0
생활체육 종목지정 육성	60,000	0	20,000	80,000
전국 생활체육대회 참가	350,000	0	64,500	414,500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95,000	0	15,000	110,000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심사결과 예산액
		감 액	증 액	
회장기 생활체육대회	110,000	0	26,190	136,190
장수배수지 내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100,000	0	165,000	265,000
시립예술단 단무운영비	12,000	0	8,000	20,000
특별전 대여유물 종합보험 료(노령이주 150주년)	5,000	0	12,000	17,000
노령지역 이주 150주년 특 별전	30,000	0	15,000	45,000
노령지역 이주 150주년 외 빈초청여비	10,000	0	8,000	18,000
전시 안내 및 홍보물 제작 (컴팩스마트시티 운영)	6,000	0	14,000	20,000
교양강좌 운영(컴팩스마트시 티 운영)	7,000	0	23,000	30,000
교양프로그램 운영(컴팩스마 트시티 운영)	20,000	0	10,000	30,000
솜포구입(컴팩스마트시티 운영)	5,000	0	10,000	15,000
온습도기록계 구입(컴팩스마 트시티 운영)	2,320	0	3,280	5,600
정수기 임차료(컴팩스마트시 티 운영)	2,322	0	774	3,096
시설장비유지비(컴팩스마트 시티 운영)	111,660	0	72,000	183,660
컴팩스마트시티 시설 종합위 탁 관리(컴팩스마트시티 운영)	458,000	0	52,000	510,000
2014 런던국제도서전 세계 책의 수도 인천홍보관 운영	0	0	100,000	100,000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지원	0	0	180,000	180,000
책 읽어주는 목소리 기부	0	0	50,000	50,000
작은도서관과 함께하는 독 서와 Healing	0	0	30,000	30,000
시 지정문화재 형상변경 허용 기준 조정안 도면작성 용역	0	0	100,000	100,000
인천관광사진 공모전	0	0	30,000	30,000
2014인천AG 및 장애인AG 입시 관광 안내소운영	0	0	15,000	15,000
장애인체육관 건립	0	0	450,000	450,000
2014 인천국제여자챌린저 테니스대회	0	0	120,000	120,000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심사결과 예산액
		감 액	증 액	
시립예술단 급여프로그램 구입	0	0	11,000	11,000
대·소공연장 인터컴 시스템 구입	0	0	105,000	105,000
소장유물 구입	0	0	100,000	100,000
도록 발간	0	0	50,000	50,000
컴팩스마트시티 안내용 리 플렛 제작	0	0	20,000	20,000
카메라 구입 (컴팩스마트시티 운영)	0	0	2,300	2,300
렌즈 구입 (컴팩스마트시티 운영)	0	0	800	800
조명 및 장비 구입 (컴팩스마트시티 운영)	0	0	2,200	2,200
충장공 어재연 장군 충장사 건립 토지매입비	0	0	100,000	100,000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138,651,008	△2,000,000	0	136,651,008
인천광역시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전출금	138,651,008	△2,000,000	0	136,651,008
경제수도추진본부	280,011,754	△4,335,900	3,905,900	279,581,754
인천N방송국 운영	340,000	△40,000	0	300,000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원	29,600,000	△1,800,000	0	27,800,000
지능형 로봇산업육성지원	200,000	0	100,000	300,000
부평역상권 활성화 기본계 획 용역	300,000	△200,000	0	100,000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신포, 신기, 강화)	6,160,881	0	300,000	6,460,881
인천우수시장 상품전시회 개최 지원	100,000	△30,000	0	70,000
인천시 지역화폐 시범사업	100,000	△50,000	0	50,000
청천농장 산업단지 조성 타 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	500,000	△200,000	0	300,000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400,000	0	400,000	800,000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2,000,000	△200,000	0	1,800,000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심사결과 예산액
		감 액	증 액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판매 지원	28,000	0	22,000	50,000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	200,000	0	100,000	300,000
청소년 디자인 교육 개발	50,000	△50,000	0	0
우수디자인 시제품 개발 지원	300,000	0	300,000	600,000
인천국제 디자인페어	150,000	△150,000	0	0
근로자문화센터 운영 위탁 대행비	2,248,098	△248,098	0	2,000,000
청소년사회적사업가/소셜벤처 육성 사업	300,000	△120,000	0	180,000
공정무역단체 지원	111,800	0	123,200	235,000
인삼명품화 사업	300,000	0	100,000	400,000
친환경농법지원	148,605	0	29,700	178,305
농산물유통저온저장고 지원	200,000	0	800,000	1,000,000
토지매입비(구월농산물도매 시장 이전사업)	52,140,000	△1,247,802	0	50,892,198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0	0	200,000	200,000
재해대비 영농편의시설개보 수비	0	0	250,000	250,000
가축소모성질병 예방약품 지원	0	0	60,000	60,000
유용미생물생산실 운영 배 지 구입	0	0	100,000	100,000
도축장 냉동시설 지원	0	0	100,000	100,000
사회적기업 홍보관 운영비	0	0	20,000	20,000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 전) 지원	0	0	100,000	100,000
공무원 디자인 아카데미	0	0	25,000	25,000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편 철지원	0	0	30,000	30,000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0	0	362,000	362,000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0	0	44,000	44,000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심사결과 예산액
		감 액	증 액	
향균솔 지원	0	0	30,000	30,000
인천 로봇기업 공연지원	0	0	50,000	50,000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용 역 대행사업비	0	0	260,000	260,000
환경녹지국	204,862,928	△1,015,000	385,000	204,232,928
UN지속가능발전센터 운영 부담금	1,200,000	△600,000	0	600,000
인천의제 21 실천협의회 사 업비 지원	286,875	0	30,000	316,875
환경문화예술보급사업 지원	85,000	△85,000	0	0
옹벽 및 벽면녹화	200,000	△50,000	0	150,000
푸른인천가꾸기 시민협의회	82,408	0	30,000	112,408
원적산 야외공연장 보수공사	300,000	△100,000	0	200,000
기증수목 이식 등	80,000	△80,000	0	0
아시아경기대회 대비 꽃탑 및 조형물 설치	500,000	△100,000	0	400,000
계양산 반딧불이 축제(자치 단체경상보조)	0	0	25,000	25,000
클린하우스	0	0	300,000	300,000
항만공항해양국				
크루즈 유치 활용	200,000	△50,000	0	150,000
인천광역시물류연구회운영 지원	100,000	0	20,000	120,000
항공산업기술혁신센터설립 지원	500,000	△150,000	0	350,000
갯바위 청소 시범사업	50,000	△20,000	0	30,000
자전거를 이용한 사계절 섬투 어 시범사업	100,000	△50,000	0	50,000
용기포항 여객터미널 운영	200,000	△100,000	0	100,000
양식장 원동시설 지원사업	50,000	0	30,000	80,000
양식어장 서식지 조성(큰돌 깔기)	100,000	△50,000	0	50,000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심사결과 예산액
		감 액	증 액	
장봉도 어장관리선 구입 지원	100,000	△30,000	0	70,000
폐류양식 종패 살포(덕적, 장봉)	100,000	△50,000	0	50,000
어선어업인 보험료지원	90,000	0	90,000	180,000
수산물 포장용기 지원	70,000	0	60,000	130,000
인천시장 수산물 품질인증 품목지원	50,000	0	6,000	56,000
김건조기계 구입 지원(장봉)	100,000	△50,000	0	50,000
수산물하역시설 설치 지원 (카고크레인 2개소)	10,000	0	70,000	80,000
1.2톤 냉동탑차 구입	26,000	0	36,000	62,000
새우젓 및 장터개설 관광상 품개발지원	0	0	100,000	100,000
내항재개발지원협의회	0	0	20,000	20,000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 보조	3,797,600	△500,000	0	3,297,600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 타당 성 및 개발구상 용역(연구용역비)	0	0	500,000	500,000
농업기술센터	6,740,770	△90,000	437,035	7,087,805
저온저장시설(고품질 쌀 건조, 저온저장 시범)	14,520	0	8,880	23,400
소규모 정미시설, 소형포장 재, 저온저장고, 포장기계(기 능성 쌀생산시범)	7,920	0	22,080	30,000
첨단자동화온실(1-2W) 설치 시범(경제수도에 걸맞는 명 품농산물 육성)	43,200	0	43,200	86,400
항생제절감 및 고품질축산 물생산시범(고품질 축산물생 산 기술보급 시범)	12,000	0	18,000	30,000
도심 옥상을 활용한 텃밭조성 시범관리 인부임	20,000	△20,000	0	0
도심 옥상을 활용한 텃밭조성 시범관리 운영	10,000	△10,000	0	0
도심 옥상을 활용한 텃밭조성 시범 운영재료	50,000	△50,000	0	0
도심 옥상을 활용한 텃밭조성 공사	10,000	△10,000	0	0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심사결과 예산액
		감 액	증 액	
벼 키다리 예방시범(강화,옹진)	6,000	0	28,875	34,875
농기계 임대사업비	0	0	200,000	200,000
포도과원 운송레일 설치 시 범(강화)	0	0	80,000	80,000
가축 자동사료 급이시설 시 범(강화)	0	0	36,000	36,000
건설교통국	611,124,585	△15,615,000	10,800,000	606,309,585
불법은행 택시 신고포상금 (기타보상금)	20,000	△15,000	0	5,000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공 사(공사비)	18,717,000	△10,800,000	0	7,917,000
14년도 보장기준 통행료 수 입 지원(13년도)				
- 문학터널	4,800,000	△4,800,000	0	0
- 원적산터널	6,500,000	0	4,750,000	11,250,000
- 만월산터널	7,400,000	0	6,050,000	13,450,000
도시계획국	166,631,079	△2,750,500	12,932,000	176,812,579
미군부대 반환공여지역 보 상비(반환공여구역 등 주변 지역개발사업)	30,000,000	0	12,932,000	42,932,000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2,250,000	△112,500	0	2,137,500
동구 배다리	2,520,000	△1,126,000	0	1,394,000
남구학골마을구역	900,000	△45,000	0	855,000
남구제물포구역북부역	1,440,000	△72,000	0	1,368,000
남구석정마을	2,790,000	△139,500	0	2,650,500
연수구청능마을구역	1,480,500	△74,000	0	1,406,500
연수구농원마을구역	3,573,000	△178,000	0	3,395,000
남동구 간석자유시장구역	1,980,000	△99,000	0	1,881,000
부평구동암초교주변구역	3,870,000	△193,500	0	3,676,500
부평구부평고교주변구역	3,330,000	△166,500	0	3,163,500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심사결과 예산액
		감 액	증 액	
계양구계양문화회관동측구역	3,420,000	△171,000	0	3,249,000
서구가정여중주변구역	2,970,000	△148,500	0	2,821,500
서구신현동 회화나무골구역	4,500,000	△225,000	0	4,275,000
공 기 업 특 별 회 계	1,242,217,000	△11,921,095	3,283,999	1,233,579,904
상 수 도 사 업	288,670,989	△695,320	695,320	288,670,989
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해외 선진지 연수	60,000	△10,000	0	50,000
매립지시설부담금(부평정수장)	54,120	△54,120	0	0
매립지시설부담금(공촌정수장)	55,200	△55,200	0	0
설비보수 자재	40,000	△15,000	0	25,000
사업비용 예비비	2,153,700	0	134,320	2,288,020
영종해저부설관로 타당성조 사 및 기본설계용역	500,000	△150,000	0	350,000
통합 관급자재 수급, 관리에 따른 자재구입비	2,948,175	△411,000	0	2,537,175
자본적지출 예비비	4,127,503	0	561,000	4,688,503
하 수 도 사 업	177,020,773	△4,350,490	3,397,490	176,067,773
인천환경공단(하수처리장) 위 탁운영비	32,485,960	0	1,173,490	33,659,450
사업예산 예비비	1,650,709	△1,173,490	0	477,219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고도 화 처리시설(3단계)	3,177,000	△3,177,000	0	0
산곡동 노량다리길 일원 하수 도설치공사(시설비)	0	0	293,000	293,000
산곡동 노량다리길 일원 하수 도설치공사(시설부대비)	0	0	2,109	2,109
경명대로 1114번길 일원 하수 압거 정비사업(시설비)	0	0	500,000	500,000
경명대로 1114번길 일원 하수 압거 정비사업(시설부대비)	0	0	3,600	3,600
간석4동 염전로 일원 노후 하 수관거 정비사업(시설비)	0	0	250,000	250,000
간석4동 염전로 일원 노후 하 수관거 정비사업(시설부대비)	0	0	1,800	1,800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심사결과 예산액
		감 액	증 액	
자본예산 예비비	1,152,823	0	1,173,491	2,326,314
경 제 자 유 구 역	569,839,972	△8,048,775	7,548,775	569,339,972
IFEZ Youth Toung Membership	150,000	△100,000	0	50,000
2014 인천송도마라톤 대회	0	0	100,000	100,000
음악 불꽃 축제	0	0	300,000	300,000
방송, 인터넷, 영상매체(교통수단, 전광판등)	800,000	△200,000	0	600,000
대외협력 지원 및 운영	23,000	0	460,000	483,000
영종관리과 청사 이전	20,000	△20,000	0	0
하늘문화센터 운영위탁 사업비	2,413,209	△500,000	0	1,913,209
사업예산 예비비	1,310,867	△540,000	0	770,867
G-Tower 환경개선공사	60,000	△20,000	0	40,000
엠코1단계 기반시설 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200,000	△200,000	0	0
송도 5,7공구 공동구 국고보조금 반환	6,508,775	△6,508,775	0	0
2014 아시아경기대회 대비 공한지 정비	99,000	0	100,000	199,000
문화사업 개발용역	0	0	100,000	100,000
자본예산 예비비	6,629,353	0	6,528,775	13,158,128
기 타 특 별 회 계	1,334,705,581	△2,000,000	0	1,332,705,581
아 시 아 경 기 대 회	425,020,448	△2,000,000	0	423,020,448
경기장건설 지방채 상황이자 (2013,2014)	18,650,700	△2,000,000	0	16,650,700

※ 기타 변경사항

○ 계속비이월 조서 변경

- 반환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개발사업
⇒ 일반회계 계속비조서에 추가

○ 사업명 변경

- 일반회계 예산서안 844쪽 수산물하역시설 수리지원(카고크레인)
⇒ 수하물하역시설 설치 지원(카고크레인 2개소)
- 일반회계 예산서안 933쪽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484,000천원
⇒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으로 변경

○ 예산과목 변경

- 일반회계 예산서안 579쪽 강화교통 향교 유림회관 건립 31,000천원
· 자치단체자본보조 ⇒ 시설비
- 일반회계 예산서안 811쪽 민북지역산지관리 종합계획 50,000천원
· 시설비 ⇒ 연구용역비
- 일반회계 예산서안 811쪽 사유림 경영정보 DB구축 22,450천원
· 시설비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 소수의견 : 해당사항 없음

5. 기타사항

- 예결위원회 증액 및 새로운 비목 설치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이 부동의 하였으나 수정가결 의결하였음